

제43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2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유상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정태호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유상범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철저히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으로 배준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만큼 중요한 게 결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허성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창원 진해의 이종욱입니다. 창원 한 분 더 계셔서 반갑고요.

힘든 과정일 것 같지만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그나마 즐겁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으로 김성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으로 박지원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朴芝源 위원**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배석할 재정경제부와 감사원, 기획예산처 출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장 재정경제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정경제부2차관 허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과 정태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소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경부가 기예처와 분리되어 처음 맡게 되는 결산소위로서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원은 이번 결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세심히 살펴서 향후 감사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소위가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과 감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은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별도의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성훈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예결위와 부처 관계자분께서 함께 수고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0시07분)

○소위원장 유상범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송수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자료,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계획안 1번 활동기간 및 장소, 소위원회 구성, 정부 측 참석자는 생략하고 3쪽에 있는 심사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3쪽 보시면 첫 번째, 심사대상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원칙 보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사순서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제부처에서 비경제 순으로 그리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각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라를 보시면요, 자료 작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세 번째 예결위 심사사항 그렇게 그 순서대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쪽입니다.

자료 4쪽 심사방식입니다.

심사방식은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전문위원 보고, 정부의견 청취, 위원님들 질의, 소위원회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별표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 중에 정부의견이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감사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항목인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별도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소위 의결 부분입니다.

이건 소위 심사가 끝나고 보류된 쟁점사항이 각 교섭단체 간에 조율된 이후에 소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자료 5쪽 시정요구유형은 5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회의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타 자료 6쪽 이하는 과거 10년 동안 시정요구사항들 통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은 향후 정태호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성훈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했고 심사 중인 위원회가 1개 있으며 일정 미정인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16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시정 65건, 주의 257건, 제도개선 794건, 합계 총 108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처별 심사 결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주 전문위원, 이 숫자는 현재 9개 위원회 예비심사 완료된 내용만 정리된 거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저희 그 소위자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된 것 다 들어갔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된 거는 현재 시정요구된 내용은 9개 위원회 예비 심사가 완료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현재까지?

○전문위원 주성훈 예.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심사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끝으로 예결위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들으신 내용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네요.

심사 순서와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위 심사자료 제1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부처부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법안소위 참석을 고려해서 가장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자료 1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시간 진행하고 20분 휴식하는 형식으로 저희 소위도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되면 대충 생리적 문제가 발생할 시기가 꼭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2차관 이형훈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기초실장 김국일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세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말씀 듣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보시는 소위자료에는 시정요구사항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부처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경우나 복수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어서 선택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47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153쪽입니다.

연번 2번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재정 운용 관리 강화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와 1인당 진료비 증가 추이, 고령화, 제도 변경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법정무지출인 의료급여비의 미지급금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 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속기사를 위해서도 소속과 직책을 먼저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개진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복지부1차관 현수엽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문구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전망’이 부분만 제외하고 문구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료급여는 단년도 일반회계 사업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같이 대상자 확대, 의료기관 수가 인상 등 정책결정 변수가 크고 또 조세·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출 변동 규모가 커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전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구 수정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잘 듣지를 못하겠네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문구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전망’ 그 부분만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사업은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같이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고 또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 같은 정책결정 변수가 크고 조세·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출 변동 규모가 커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전망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만 제외하고 문구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이제는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관님,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 의료급여 중기 지출전망’이라고 그래서 2034년 약 23조 원을 전망하고 현재의 수급자 수 증가 및 의료 이용 양상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상수급자 수와 1인당 급여비의 곱으로 산출한다라는 이런 프로젝션을 예측 가능하게 하셨던 자료도 있는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10년 장기 추계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같은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글썄요,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추계라든지 설정이라는 게 100% 정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청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몇백억짜리도 아니고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어요. 대상자 확대가 정책적인 변수고 수가 인상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전망을 해 보자는 거지요. 추세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요 변수가 뭔지를 추려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 용어는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장기 재정전망, 중장기 전망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국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문구를 한번 다듬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님.

○朴芝源 위원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문구 안에 들어 있어서 그리고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에 충분히 들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굳이 국회의 심의를 받는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객관적이고 투명한’에는 큰 이견 없으실 것 같고 ‘중장기’라는 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른 문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했다가 추후에 다른 문구 제시가 되면 재정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연번 9번,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 사업……

○소위원장 유상범 몇 페이지?

○전문위원 주성훈 160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미안합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9번입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 사업,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의료데이터중심병원지원 사업, 제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급성 등 객관성 입증 필요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교육·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투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제기되어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될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제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의견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산업 수요 변화도 매우 빠릅니다. 그런 만큼 정책효과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전 과정 기술개발 효과로부터 전체 실질적인 실효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이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비 확보 계획과 집행 가능성 검증 결과를 국회에 한꺼번에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배준영 위원 내용적으로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는가 이러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지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회계의 연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또 연구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예측 가능하고 또 필요한 연구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방비 매칭이라든가 연구계의 연구 수요 대응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요, 2차 추경에 편성한 것? 그렇지요?

다음이에요?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이종욱 위원 다음 사업이군요. 다음 사업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추경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추경으로 넣어서 그 집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시면 이것 제도개선을 선택하시면, 제도개선이 단순하게 그냥 주의나 시정과 같은 부담을 갖지 않는 지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라면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 이행이 돼

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제도개선으로 넘어와서 그냥 1년 보내는 형식적인 거라면 사실 제도개선을 채택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방비 매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통합됐는데 이의 없으면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1쪽입니다.

연번 10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 확보 필요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검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지역별 집행률을 지속 점검하여 부진 지역의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실효집행 중심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추경 증액분의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이 제기되어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종욱 위원 아까 제가 이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으로 정부가 가져올 때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요, 통상? 이거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했는데 그때 산불추경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게 있고 이후에 지방비가 매칭, 추경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의 추경에서는 지방 수요조사 결과를 더 정확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도가 높은 취약계층, 기초, 차상위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다 받지 않고 그중에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의에서 제도개선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차관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종래 하던 거랑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자체가 단순히 실무자들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복지부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작년엔 저희가 이 집행을 낮은 것에 복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매칭 가능한지를 더 철저히 두 번 물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 온 것 중에서 다 반영하지 않고 필요도가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올해는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시점이 7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아는데 그 자체가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추경은 긴급성을 요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고 추경을 편성을 했지만 작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편성하고 집행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고요. 올해 편성부터는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 단계를 지자체 것들을 다 받지 않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거를 저희가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담았고 그다음에 집행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성무 위원 배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를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지자체 추경 과정에 감액이 되거나 또 사업이 지자체 의회에서 변동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조항, 아무리 긴밀히 해도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방침 부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 두 가지 부분에, 주의와 제도개선에 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배 위원님, 위원님은 입장이 어떠신가요?

○배준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미집행이 74.7%라는 거는 사실 추경을 허술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제대로 집행을 했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만 올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방금 차관께서 철저히 집행을 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적어도 소위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배준영·이종욱 위원님한테 2026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 말씀에 대한 검증 및 제도개선 선택에 대한 저희 판단을 보충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사안은 제도개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연번 1번, 건강보험 재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필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7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것, 여기에는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을 요청합니다. 문구 수정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것’에서 ‘국회 보고 등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같은 현금급여와 다르게 대상자의 수준과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의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연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내용과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금화하는 경우에 염려되는 부분은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 발생이라든가 기금운용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적시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는 부분도 함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기금화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재원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평가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

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출을 방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 원칙은 보건복지부가 숙지를 하시고 결국은 기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 방금 유연한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금화하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꼭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슈인데요. 결국 문제는 이 10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정부 지원금만 국회에서 보고 나머지는 빠지기 때문에 결국 정부 총지출에도 빠지거든요. 이게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거의 100조니까 한 팔구십 조가 정부 총지출이 왔다갔다 하고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왜곡 요소가 발생을 하는 점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기금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한다 이런 틀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화’라는 용어를 빼고 아까 외부 통제 뭐라고 하셨지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고, ‘기금화할 것’ 이렇게는 부담스러울 거니까 ‘기금화하는 방안 등 국회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기금화라는 용어는 이번에 한번 넣어서 좀 책임감 있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朴芝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님.

○朴芝源 위원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라서 거기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예결위 단계에서 기금화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게 좀 적절한지가 의문이 있어서 ‘외부 통제 강화 마련’ 정도가 저는 적절한 문구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형식으로 약간 수정해서 의견이 나왔고 박지원 위원님은 반대 의견이 나와서 계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를 해서……

○이종욱 위원 외국 사례도 좀 정리해 달라고……

○소위원장 유상범 외국 사례까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저희들이 보류하고 다시 심사할 때, 그러니까 내일까지지요? 내일까지 정리해서 이종욱 위원님하고, 박지원 위원님도 보고받으시겠어요?

○朴芝源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하시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4건밖에 안 됐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기획예산처의 재정성과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지금 복지부에서 정부 입장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한 4건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4건? 그러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첫 번째로는 125페이지, 건강보험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일반회계 지원율이 지금 연례적으로 11~12% 수준이라서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하시면서 일반회계의 법정 지원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수용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 기획예산처 입장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행 법 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른 재량의 여지가 있는 법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보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누적 적립금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내년도 27년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금년 26년도보다 한 1.1조 원 정도를 확대해서 한 13.8조 원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처 입장은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라고 표현돼 있는 것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로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복지부 의견을……

○소위원장 유상범 복지부 의견도 한번 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결산심의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108조 1항에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나온 만큼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을 해도,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 예산에서는 1조 100억 정도를 추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비율로 보면 올해보다 더 늘어서 12.3%입니다. 12.3%가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추고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와 복지부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상임위하고 예산처하고 의견이 바뀌지요. 사실 예결위는, 저희는 예산처 쪽에 가까워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별 상임위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예결위니까 예산처 쪽으로 저는 생각이 가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중재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금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여기까지 놔두고요. ‘개선하고’를 ‘노력하고’ 정도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입장 말씀하시지요.

○**朴芝源 위원** 부처랑 기획처 의견이 갈리면 이것도 좀 보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보류한다고 해서 아마 의견이 조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수정안을 이종욱 위원님이 내셨으니 이종욱 위원님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고 예산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라고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고 제3안은 이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이종욱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삭제하고 그냥 ‘개선하고’만 ‘노력하고’로.

○**소위원장 유상범** 삭제하고 그냥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라는 수정안을 내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종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는 어때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제도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데요. 2010년 이후에 매년 100억 원씩 정액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지적인데 복지부하고 조금 저희들도 생각이 달라서요.

현재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상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들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8년도에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들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것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직역연금에서도 운영비를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확대하자라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우니 문구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원안에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할 방안을 논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빼 주시고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는 일반회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법 87조에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에 저희 관리운영비 3854억 중에 100억, 약 2.6%를 지원한 이래 2026년 관리운영비 6174억까지 증액했는데 100억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운영비 중 지금 현재 1.6%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관리운영비를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액분이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역시 받는 쪽과 주는 쪽의 갈등이 늘 있구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저는 기획예산처가 건강부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사회보험 얘기했다가 뒤에는 직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연금 성격이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이 같습니까? 일부 직역들이 돈을 받는 직역하고는……

처음에는 사회연금인 것처럼 말해서 마치 모든 것이 똑같은데 국민연금만 특혜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말하다가 다른 직역연금은 알아서 자기들 운영비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데, 교사들끼리 모여서 내는 연금이야 당연히 교사들이 낸 돈에서 연금 운용을 해야지요.

지금 20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700만 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 국민연금과 군인이나 사학연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으로 줄인 게 왜입니까? 그 전인 노무현 정부까지 대략 49%에서 낮을 때도 38%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아낄 때 찾아보면서 기획예산처가 그때 후려쳐 가지고 100억으로 정액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 20년 가까이 한 번도 증액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 5%였던 부담률이 지금 1.7%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발표한 데가 정부잖아요. 2071년이면 고갈될 거고 고갈이 되고 나면 어쨌거나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71년을 고갈시점으로 잡고 지금부터 2071년까지 정부가 이 금액을 보존하면 대략 한 111조 정도가 보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금운용률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00조 정도의 국민연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고 우리가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망기하고 나는 모르겠고 내 임기 동안 그냥 예산 안 썼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가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김성희 위원님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간다 그런 입장이지요?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종욱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재정부는 여기에 지금 의견을 4개를 들고 오면 안 돼요. 그전에 부처랑 잘 협의해서 없거나 잘해야 1, 2개 들고 와야지 지금 4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은 부처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여기 국회에 와 가지고 정부 내 의견을 우리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주 예외적인 사유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구는 잘 보세요. 결론이 ‘논의할 것’이잖아요. 그 안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 부담스럽지요. 그것은 속마음이고 결론은 뭐냐 할 것이니까, 사전에 못 막았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보고 다 고쳐 달라고 하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집안 살림까지 우리가 다 살아 줘야 돼요?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일반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곤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정시기 내에 다른 것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와 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제출된 안 그대로 제도개선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입장을 정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됐으니까 보류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뒤에서……

○소위원장 유상범 작년에도 아마 이거 가지고 논의가 돼서 조정이 됐을 텐데 이걸 가지고 올해 부처에 맡겨 놓으면……

○정태호 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서 결론은 내려야 되니까 한 템포 쉬고 가자 이거지요, 조정을 일단 해 볼 테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한 템포 쉴 거면 빨리 끝냈지. 그냥 빨리 마무리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데……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말씀 주신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역연금만 저희들이 연금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회보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는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희 운영비 외에 나머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정태호 간사께서 보류하고 문구 정리를 다시 한번 양 부처 간에 논의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정부 내에서 의견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저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실비성 비용 지원을 확대해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복지부하고 달리 최근에 저희들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대폭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해서 27년도에는 9.6%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운영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복지부는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보조는 확대하고 있지만 다른 여타 운영비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라는 거는 다른 유사 사업과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복지부 의견.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는 교통비·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염 때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하루에 한 번 원칙이고 폭염 때는 두 번을 했고, 안부전화에서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게 먼 거리, 원거리 놓여촌, 어떨 때는 섬까지 찾아가면 교통비 그리고 안부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비가 듭니다. 이번 폭염 때도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찾아가서 마당에 쓰러져 계시는 노인을 구급차로 해서 살린 케이스가 2건 있었습니다. 통신비·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배준영 위원** 이 시정요구사항은 이러한 교통비·통신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지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나오셨지만 이번에 사상 최대 증가 폭 13%를 올려 갖고 820조 원대의 예산을 운용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맞춤서비스에 대한 거는 검토도 못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朴芝源 위원** 이게 실비성 비용을 마련할 걸 검토하라는 문구가 아니고 ‘마련하고’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문구만으로 보면 교통비랑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을 거의 강제하는 취지의 문구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어야 되면 좀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의견이나뉘고 있어서, 문구 해석의 문제기는 한데요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인력 운영방식 고용구조개선을 검토하라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 차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그 부분 정리를 양 부처에서 해서 검토할 때 다시 저희들한테 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66페이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불가라는 의견인데 저희 기획예산처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대화가 필요하다?

○**배준영 위원** 기금화가 필요하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 기금화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기금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도 이미 저희가 보류했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소위원장 유상범** 보류했지만 그러면 그당시에…… 지금 시간상 너무 많은 걸 들고 오셨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보류 할 때 또 추가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이만 보건복지부 보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참석하신 관계자 간단히 자기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질병청차장 김기남입니다.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 장호연** 기획조정관 장호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질병관리청 시정요구사항은 총 36건입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처리속도 제고 필요 등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배경 및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상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보상 기준을 재정

립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제기되어서 두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심의체계 구축과 신청 건에 대한 심의·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심의·보상을 신속히 집행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제기되어서 두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질병청 의견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보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앞으로 보상을 더 강화하고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저는 질병관리청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결론은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하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아직도 소송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고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최종적으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받아 왔던 고통이라든지 기다림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2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심사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같이 하고 제도에 대한 숙지와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성실하게 심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왔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생활 자체가 통째로 풍비박산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기준이 예방접종과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만 보상을 해 주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지금 특별법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요구하지 않고 인과관계

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추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시간적인 개연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학이론이라든지 경험칙에 봤을 때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처럼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할 때 일종의 패스트트랙이 처음 도입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나면 예방접종과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유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 문제를 다루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그 후유증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에 집착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후유증으로 보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뭔가 너무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된 것…… 제정이 된 건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제정됐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정이 된 거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부분을 정태호 간사님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백신은 정부가 권유를 했다가보다는 사실상 강제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리고 코로나백신을 맞고 난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치료를 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사안에 관련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이 아주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송 문제도 그래요. 사실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질병청에서

항소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2026년 7월 28일 4168건이 신청됐는데 심의는 63건에 불과합니다. 심의율이 1.5%예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질병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특정 사안이 됐으면, 무슨 비행기 사고나 이태원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지만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질병청에서 앞으로 이 심의 및 보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국회가 좀……

○이종욱 위원 그러면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을 하되, 그런데 지금 당장 이틀 안에 이 안을 만들어 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한 달 내 여기 소위 위원들에게 질병청의 개선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소위원장 유상범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처가 따로 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게 아니라 그 외 또……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아닙니다.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질병청 1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질병청 지금 1건 있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의 있는 게 1건이고.

○이종욱 위원 이게 질병청인가? 코로나 치료제 이게 질병청 거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코로나 치료제 질병청 거지요.

○이종욱 위원 코로나 치료제 질병청 겁니까? 지금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식약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께서는 참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김용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없어요? 잘됐네.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기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이종욱 위원** 제가 식약처에 묻고 싶은 건 지금 검찰은 기소유예 했다고 하는데, 식약처 이것 담당하는 국이 어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임상시험 계획 승인하는 데가 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가 굉장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식약처 담당자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 보낸 것도 확인했고 또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지인한테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하루 만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런 녹취록도 확보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소유예 했어요. 지금 식약처에 묻고 싶은 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부 감찰, 내부 감사 이런 건 하셨어요?

○**김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끝나고 하세요.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확인만 하겠습니까.

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검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이종욱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안 해요? 내부적으로 공직자들, 지금 조직이 식품안전처…… 이게 개인 비리는 아니잖아요. 개인 비리인 동시에 식품안전처의 위상하고도 관계돼 있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어떤 비리가……

○이종욱 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걸, 당연히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했습니까?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비위 이런 것이 확인되면 자체 감사는 가능한데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면밀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지금 그냥 묻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김승원 의원님이 후보자 되면서 전면에 나섰잖아요. 지금 확인 안 해 주신다고 하는데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김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결산 관련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글썄, 결산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 그러면 저는 제너럴하게 물어볼게요.

차장님, 어떤 새로운 약이 임상시험 계획하고 승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임상시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계획은 보통 언제 만에 결정되고 그리고 실제로 임상시험은 언제쯤 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법정 처리기한은 30일로 돼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보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왔는데 검토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잠시 시간…… 오신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오신 의미를 두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하시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참석한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기획조정실장 김현정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총 14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12건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조금 천천히 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연번 2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경 증액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대상자를 과도하게 선정한 후 추가경정 예산,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지 않고 실제 가용예산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하며 청년에게 실제 지급된 실집행액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시정·주의의 세 가지 유형이 제기되어서 3개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2.7만 명을 더 모집해서 예산 부족하니까 추경으로 메꾼 겁니다. 이게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먼저 선정하고 기정예산과 추경으로 부족분을 충당했지요. 그리고 추경을 했는데 오히려 257억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증액액의 45%가 이월·불용됐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경우인데……

예산 부족을 이미 알고도 대상자 전원에게 예산을 배정했지요. 그리고 또 추경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한 것은 국가재정법 89조 제2항 위반으로 제가 볼 때는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芝源 위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께서 아마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검토하신 시정요구 유형으로 존중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제가 의견 안 낸 건데요.

○朴芝源 위원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은 제도개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시정 요구, 이 부분 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페이지, 301쪽입니다.

연번 3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환수 관리 강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환수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시정요구사항 보니까 저도 상임위 의견의 제도개선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 저는 오히려 좀 이 문구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환수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이래야지 ‘마련을 검토할 것’, ‘마련할 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실효적인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마련해 놓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마련도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마련을 검토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지적이네요.

○이종욱 위원 너무 이중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마련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련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국토부 입장은 어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문구를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바로 밑의 사업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고요.

동 사업에 대해서 미편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민주당 의견 없으십니까?

제도개선, 전용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제도개선이라고 여러분께서 답을 주셨는데 제도의 미비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이 연구용역이 청년월세의 추계가 좀 부정확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서 가지고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라서 실제 청년월세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묻는 말은 그렇다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용하는 것이 반복되는 건 안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강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답을 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방금 그 제도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장님, 한 말씀……

지금 전문위원 설명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 두 번째 동그라미?

○전문위원 주성훈 예, 30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생략된 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규모와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청년에게 단순 월세 보조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출할 것, 여기에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이견? 이것에 대한 정부가 이견 있다는 거지요?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관련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문구를 삭제 요청드립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견 이미 저희가 보류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처에서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문구를 삭제하고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 했습니다. 이미 보류하기로 했으니깐 그러면 보류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은 별도로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의견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대책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SOC분과위원회·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적기에 진행하고 필요한 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두 번째 동그라미 예비타당성조사 시기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같이 얘기하세요. 같이 보고하고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세 번째 동그라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전문위원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걸 같이하고 한꺼번에 논의합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지금 정부에서 두 번째만 의견을 했고 세 번째는 수용을 한……

○소위원장 유상범 아, 세 번째는 수용을 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수용인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그러면 알았습니다.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차관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관련 절차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한 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이게 도대체 적기라는 게 뭘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제도개선 안 하겠다는 의미랑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적기를 좀 더 뭐랄까요, 클래리파이(clarify)라고 그러나요?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실 방안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제도개선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무기관이 기획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처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예타를 하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출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작업과 그것에 관련된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적기에 한다고 얘기하시고 넘어갈 문제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제도의 미비나 불합리할 때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거나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해서 시정요구 한 내용은 제도의 부재 또는 제도의 미비, 법령의 미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이걸 좀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게 각 지역구의원들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부처 내부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처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도개선이라고 하지만 제도개선 할 게 없잖아. 뭘 제도개선 해요?

결국은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내부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니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 가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한번 정리를 하고요.

○朴芝源 위원 이게 주의가 돼 버리면 아예 위법·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이게 위법·부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진행이 되는 방식을, 제도를 조금 더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하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부처에서 좀 더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누가 와 있지요? 기획예산처에서 하지요? 여기 지금 보면 지침에 2년이라고 돼 있어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66%가 초과했다.

제 기억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내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2년이에요? 그건 2년도 안 지켜요? 내용 아십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현재 규정상으로는 철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철도 외의 다른 것은 9개월이고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데요, 철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22년도에 저희들이 제도 개편을 했고 제도 개편 이후의 통계를 보면 많이 단축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편 전까지 누적된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담당 국하고 상의해서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서 이 문제가, 국토부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나,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저희가 재심사할 때 그때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보류하고 재심사할 때……

○소위원장 유상범 사실은 국토부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처 문제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제도개선 노력을 많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보류하고 나중에 재심사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재심사할 때 다시 합시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쪽입니다. 연번 6번 물류산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한 충실한 이행 필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의 반복적 이월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의 시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부의 주의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배준영 위원 주의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 하는 것으로 동의.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앵커리츠와 같이 사업 추진 및 실제 투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자금집행계획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규모만 단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사업에 반영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며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재원을 추경을 통해 일시에 출자하여 불필요한 국채이자

등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시정·주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은 우수하나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세 번째 동그라미의 관련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는 삭제하고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 사업이 사실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PF시장이 민간에서 잘 안 되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정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안 3000억을 요구했다가 국회가 1000억 삭감하고 2000억 원이 반영됐는데 2000억 원이 전액 LH에 출자됐는데 공모사업도 늦었고 나중에 AMC에 법정자본금 100억 원만 지출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도 굉장히 장기간 소요됐고, 그리고 1조 원 조성이라는 게 실제 납입투자액이 아니라 공공, 민간, HUG 보증부 회사채 등을 합친 약정 규모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한 유형의 국민 부담 증가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芝源 위원 올해 실집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금년 말씀하시는……

○朴芝源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금년 9월에 2조 원 실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올해 안에 충분히 집행 예정이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금액이 총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억 받아서 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3000억 했던 부분은 지금 신청 자체가 2조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2000억 해서 연말에 일단 LH에 2000억을 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AMC 선정을 하고 지금 AMC 2개가 선정이 돼서 각각 50억 원 출자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청 자체가 이미 36건, 총 2조 원 규모로 들어와서 그중에 우량한 사업장으로 해서 9월 1조 원 실집행 예정입니다.

○**朴芝源 위원**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미리 예산이 선행적으로 확정이 될 필요가 있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앵커리츠를 만들고 앵커리츠가 자리츠를 통해서 다시 개별사업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선행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브릿지 자체가 PF가 안 되고 통상 땅 구입하는 데 있어서 10% 이상의 고리를 주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HUG 보증부 회사채하고 해서 한 6% 정도, 실질적으로 금리차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PF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의 경기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민간투자 유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제도개선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추정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아무 일도 발생 안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라 그래도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금년도 예산이라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집행이 늦은데 작년도 추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아무리 좋게 들어 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사업에,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크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류를 하되 지금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19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의 국회 제출의무 준수 필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변경내역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담당자 규정 숙지 미숙이라는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것도 주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도 주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저는 주의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정산금 처리 시정 필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급자 반환금의 처리 절차를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정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4대 보장 급여 전달체계와도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배준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연계한 입체적 도로망 확충 방안 필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주요 간선도로 및 병목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심층 검토를 수행하고 향후 민간투자 제안이 접수될 경우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수-과천 복합터미널 민간투자사업의 착공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방재 시설로서의 적기 기능 확보를 위한 공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나경원 의원실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위원 주성훈 지금 여기 서면질의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철회했으니까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25쪽입니다. 연번 5번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소송 중 건설보상비 전용·집행에 대한 주의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소송 중 건설보상비를 집행한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조치 하고, 2심 재판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또는 대안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중에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새만금 신공항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국가 사업도 소송 제기만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삭제 요청?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사업 진행에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관련된 사안이 진행됐던 것을 다 챙겨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결 직전에 공사비까지 전용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 힘들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새만금개발청이잖아요. 이게 매립지여서 매입 연기 협의가 가능했고 최종 폐소하면 매입비가 매몰비용이 되고 대체지 매입비까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련자에게 저는 엄중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업 재개 및 대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芝源 위원 원고 측에서 이 소송 중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1심 판결 이후에도 집행정지신청은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도 시정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 위원님은 시정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처 의견처럼 삭제 요청입니까?

○朴芝源 위원 삭제 요청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간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므로 일단 보류하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연번 7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구체적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수역-사당역 등 상습 고혼잡 구간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예산 배분이 형평성에 맞도록 시정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이 사업 내용은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무빙워크를 설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나경원 의원실에서 제출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여기 시정요구사항에는 무빙워크 하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이수역하고 사당역 상습 고혼잡 구간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것도 서울시 겁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교통약자법에 따른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사실 교통약자법에 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보면 일종의 이게 결산인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 지적사항에 이동편의시설(무빙워크)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썼으니까 무빙워크를 만들어 달라는 사업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실에서 낸 안을, 의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이종욱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

○이종욱 위원 아니, 나경원 의원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정리할 테니까 일단 보류하고.

○김성희 위원 그런데 나경원 의원실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걸 다 받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고……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받아 준다고 했습니까,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빨리 나경원 의원실하고 의견을 정리하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나경원 의원실과 또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공공임대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건설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 의무를 수행한 건설임대사업자 중 임대주택 건설자금 원금, 이자 상환 연체 및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한시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박용갑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기한 취지는 아시지요? 건설임대사업자가 조금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이종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매입임대는 여러 가지 세제로 압박하고, 건설임대는 그래도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임대사업자가 처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래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제기하신 원금상환 유예라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는데 건설임대사업자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렇지요? 매매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다른 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시장의 건설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 물량도 없지요, 월세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지요. 결국은 다주택자를 압력, 압박해 가지고 이 물량이 임대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지요? 죽어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강남 부자들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탄에 맞아서 죽는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것을 제1차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되어 되는데 1차 목표가 뭐고 2차 목표가 뭔지를 헛갈려서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1번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월세난 해소가 최고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공급을 늘려야 되고, 특히 임대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건설임대를 포함해서 매입임대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게 물론 결산이기는 합시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설임대에 한해서 박용갑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대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일단 부처에서는 삭제 의견을 냈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인 태도를 또 요구하시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의견을 들은 게 없는 모양입니다.

○朴芝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되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삭제를 한다는 부처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朴芝源 위원 삭제……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거를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종욱 위원 문구를 만들어서 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을 일단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부처에서 어떤 의견, 문구 수정해서 내실 수 있으면 내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희가 부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삭제해 주시고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상적인 건설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 쪽으로 넘기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냥 하나하나 한 소리 말고 진짜 임대 시장, 전월세 대책을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좋은 부대의견 문구를 한번 국토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합시다. 삭제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 부대의견을 내겠다는 부처의 제안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부대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우니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 삭제로 정리를 하되 부대의견을 그때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정태호 위원** 하나 지나간 게 있어 가지고……

324쪽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송차량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토부는 수용을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잘 못 들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송차량구입, 한국철도공사 수송차량구입한 건 있잖아요. 국토부는 이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수용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이게 지금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 결과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보류하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이견이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것 좀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받도록 하지요, 의견들 공유하게.

○**허성무 위원** 지금 1호차는 이미 철도공사에서 시운전 중에 있고 2·3호차도 9월 중으로 시운전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기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구나.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재검토하는 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토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형욱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박상옥**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342페이지입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건립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의 편성·집행 방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용역 사업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의 집행 적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도시계획 성격의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등 개선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요구를 하였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뉘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의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로 해 달라는 말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두 번째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해주시고 한 분께서 시정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훈 예.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 것은 앞의 거랑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이종욱 위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라는 거잖아요. 같은 취지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취지는 같은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여기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차장님, 그러면 옆에 기존에 여기에 있던 것은 부적합하니까 별도 사업으로 따로 떼서 편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사실상 집무실의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성격의 사업은 여기에 넣지 않겠다, 앞으로.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아니라 그냥 시정이나 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제도개선을 해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

○이종욱 위원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건데 무슨 제도개선을 합니까? 지침을 고칠 것도 아니고.

○정태호 위원 아까 시정으로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이종욱 위원 시정 받은 겁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요, 제도개선 하자고 그랬지.

○배준영 위원 밑의 것은 제도개선, 위의 것은 주의.

○소위원장 유상범 위의 것은 주의, 아래 것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이종욱 위원 둘 다 주의해요, 그러면. 중간으로.

○소위원장 유상범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겠네, 보니까 행복청.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대로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이종욱 위원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상범 문구는 그대로 정리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과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주셨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주신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예결위에서 깎아 주는 것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을 그대로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점심 먹고 오셔야 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참 배려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입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350쪽입니다. 연번 1번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버추얼 새만금은 새만금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이 낮은 객체가 배치되고 일부 콘텐츠에서 상호작용 오류가 발생했으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교육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버추얼 새만금 콘텐츠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콘텐츠 개선사업의 개선 대상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준공검사 시 콘텐츠 완성도에 대한 검수를 강화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개선과 주의가 지금 현재 중복적으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는 보니까 제도개선이 기재된 내용에 딱 부합하는 요구이고 부처도 그 제도개선을 수용했으니 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시·교육 등 고유사업 경비가 사업출연금으로 별도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사업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기관운영출연금으로만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편성·집행 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별도의 자체수입 없이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편성·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전시·유물·교육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중복되어 있는 점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런데 왜 사업출연금으로 안 하고 기관출연금으로 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당시에 사업출연금이 반영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에 배정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그걸 기관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부터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 자료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23년, 24년은 별도 편성되었으나 25년에는 아니라고 돼 있는데. 26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사업출연금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욱 위원 따로 뺐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거 제도개선입니까? 그냥 주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도개선 할 것 없고 그냥 주의 하나 받고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제도개선 뭐 하시려고

요? 벌써 바꿨다면서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말씀드린다면 출연금 편성 기준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청내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편성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새로 할 건 없잖아요. 주의 하나 받고 끝내면 되는 데.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정상적인 사업출연비가 예산이 배정됐을 때,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고. 이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된 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공동관로 구축 사업 거기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썼더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주의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지요.

○**朴芝源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5년도에 처음으로 별도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25년도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전용을 한 것이고 26년도에는 별도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 편성한다는 내용의 기준이 아직 명시적으로 규정화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그거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준을 새로 명문화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기 편성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 위원님 그 말씀은 적절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산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랑 사업출연금이랑 당연히 구분하게 돼 있고 그걸 정리하는 게, 명문화한다는 걸 제도개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의를 준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일회성인 부분이고 제도개선으로 갈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의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태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거 크게 더 논의를……

○**정태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도개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출연금하고 기관운영출연금 이게 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일단……

○**정태호 위원** 이거 가지고 뭘……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요. 이게 26년도에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된 걸로 보이고 하니 이거 가지고 굳이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다시 뭘 만들어 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 주의 정도로 끝내자, 그리고 일회성이니까 이

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보다 주의가 더 큰 징계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어쨌거나 부당한 건 맞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전용한 것도 거기다.....

○정태호 위원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추가.....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청에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라고 결정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태호 위원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데 뭘 어떻게 해.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53쪽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2025회계연도 집행률이 37.0%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었고 용수관로 추가 설치 수요 변경 등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등 사업준비 및 예산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동 방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염도 폐수 처리방식, 주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사업 공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대규모 이월·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과 주의가 현재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결산 결과 집행률이 37% 정도였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현장 민원 때문에 집행 부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기존 일반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간과한 것 같고 그래서 25년 6월에야 착공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상임위에서 주의 받고 온 거지요, 상임위? 맞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주의지요.

○**朴芝源 위원** 상임위 결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1차관 금한승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2차관 이호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기조실장 안세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65페이지?

○**전문위원 주성훈** 예, 소위 심사자료 2권 6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위원님들 다 준비되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두 차례의 추경에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와 수소차 수요 부족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편성 시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동반되어야 할 다른 정책 및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심의·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되 불가피한 사업 방식 변경 시에는 그 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66페이지 맞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65페이지.

○소위원장 유상범 65페이지……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시정 의견에 대해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 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2개에 대해서 시정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로……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로 전환해 달라?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이게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감액해 왔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1000억인가 1050억. 그렇지요? 1000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3000억을 불용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필요 없는 추경을 가져온 거잖아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국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국채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싶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시정요구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오늘 시정이네요, 시정.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는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전국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응된 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마음이 열 두 번씩 바뀝니다. 기존의 차를 살 것인지, 내연기관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무공해차를 살 것인지 이런 가운데서 아무리 정밀하게 예측을 해도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데 특히 작년, 재작년에 전기차들의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다 고려하신다면 주의 조치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조금 민감하게 할 게, 그렇지요? 정부에서 감액한 거를 국회에서 사실은 원복하자 그러다가 최종 1000억을 올렸어요, 증액으로. 그거를 다 기억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하는 걸로…… 도저히 용납을,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인천의 아파트단지 지하에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엄청나게 대기 수요가 있다가도 그다음에 구입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정부부처가 예견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소비 두려움 때문에 소비가 급감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이해해서 주의 조치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이거 뒤에 거랑 붙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붙어 있네요, 보니까.

○**정태호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실제로 이게 가야 될 길인데 이런 이유가 뭐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무래도 지방비 확보 업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아마 시정 의견을 주셨고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실집행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첫째, 2024년과 2025년에 전기차 캐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 영향 이래서 전기차 파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넥소 신규 브랜드가 나오기 직전이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특히 수소차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소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기차 부분은 새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 의견을 주의 의견으로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액했던 사안에서 다시 증액했던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아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전기차 캐즘은 좀 풀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태호 위원** 전기차 캐즘은 해소가 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22만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저희가 30만 대 정도 목표로 했었는데 22만 대에서 조금 집행이 어려웠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24만 대 정도, 24만~25만 대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40만 대 이상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수소차는 충전소가 부족해 가지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줄여 버린다. 그러면 수소차를 더 안 사게 되는데,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대형버스, 수소차와 수소버스 중심으로 해서 충전소 입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보급해서.....

수소 부분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아직 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충전 보급 노력을 같이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수소차도 탄력이 내년부터는 붙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좀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다음 시정요구사항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사실상 거의 같은 사업이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하고 나서……

○**전문위원 주성훈** 같이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했으나 이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이월·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가경정예산 1개월 이후 국회에서 증액한 1050억 원이 전액 지자체 자본 보조에서 한국환경공단 민간 보조로 전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만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미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국회가 자치단체 보조로 의결한 1050억 원 전액을 국고 단독 지원사업으로 전용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논의의 편리를 위해서, 일단 65페이지 이 안에 대해서는 양 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다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처리는 보류하고 다음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뒤엎것을 이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지방비 확보 의무 소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중에 징계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임위에서 제도 개선으로 시정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당초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전기차 캐즘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초 목표인 31만 대에서 27만 대 정도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서 본 예산에서 3840억 원 감액을 해 갖고 정부안을 다시 편성했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NDC 달성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790억 원만 감액하는 안으로 해서 사실상 1050억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했고 관련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지자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관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비 매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 정도 보조금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부합하게 각종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민간 보조로 비목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국비 그다음에 수요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비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 명시적으로 법령 위반이라든가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볼게요.

어쨌든 팩트는 한 달 뒤에 국회 증액분을 전용했지요? 지자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자체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관련된 지자체의 수요를 받게끔,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관련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한 달 뒤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전기차 사는 분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도 받고 지자체 보조도 받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받습니다.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국비 지원금액의 한 30% 이상은 반드시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나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전기차 보조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합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지원하는 케이스인데 그거는 렌트사업자라든지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니까 비목 전환을 해서 국비만 지원해도 되는 영업용 자동차 또는 렌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지원하는 트랙에 대해서 올해 반드시 전기차를 꼭 사고 싶다는 소비자들이 있고 지방비 보조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나는 국비만 받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상으로도, 반드시 지방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비만 지원할 수 있는 지침상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그 지침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현재로서는 지방비는 반드시 매칭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선호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국비만 받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국가 입장에서 그 지역, 그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에도 보조를 안 해 주는데 국가가 뭐 하러 보조를 해 줘니까? 자기 주민도 안 챙기는데 국가가 왜 주냐고요, 제 질문은. 그 시장·군수 밑에 있는 지자체 주민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나는 별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 하는 그런 지역에 국가가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런 질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매칭 비율을 지자체랑 균등하게, 동일하게 일정 매칭 비율을 가져가게 하고 일정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칭비 지원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소비자 중심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국비만 바뀌서라도 전기차를 꼭 사야 되겠다, 올해 내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도 저희가 완전히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이 당시 저희 집행 담당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그거는 하여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줘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보조를 더 줘야지요. 그게 책임, 지자체 자치행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걸 굉장히 나쁜 사례다, 제도 설계를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떤 선택권을 차단당하는 것 또한 권리의 차단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가져야 될 권리.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국민이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에서 이런 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방금 이 위원님 말씀은 또 나름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시장·군수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고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아니었나 판단되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예, 차관님 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저기 징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

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는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그쪽 차원에서의, 집행 차원에서의 문제 같은데……

그리고 특히 여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1개월 후 국회에서 증액한
1050억 원 전액 전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별한 불법이 있었냐 이런 문제인데 이쪽 차원
에서는 기에부하고 기예처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고 불법이 없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는 일단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 능력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비 매칭 여부나 능력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비 편성사항을 조사했고
그다음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비목 전환, 그러니까 국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에 따라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
반, 부당한 집행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징계 요구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
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하여간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집행상, 제도상
문제는 조금 있었지만 아마 징계 사유로 가기까지는 조금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
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도 그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고르게 거기에 사
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점검을 하고 다 고르게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데는 받게 하고 어느 데는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그런 고의성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안 좋
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관님,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1050억을 전액 전용을 했는데 한국환
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환경공단 보조사업은 영업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트회사라든지 영업택시라든지 이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준영 위원 글썄요, 예.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위원님들 간에, 특히 지방비 확보 의무 소홀과 관련해서 문제
점을 지적하시는 부분 또 그것은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재
정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을 타당하게 말씀하셔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
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한다면 사실 제2차 추경에서 1050억이나 증액될 때 이미
본인들이 감액 편성한 것이 4672억이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증액할 때 의견을 정확
히 개진했었다면 아마 이와 같은 예산의 큰 전용 문제로 인한 비난 그다음에 효율성 이
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재검토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건 다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7쪽입니다.

연번 3번,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실제 수요와 충전기 종류·용량, 설치 단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물량 편성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구축된 충전기 중 약 6151기는 운영되지 않는 등 충전 실효성·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사업자의 운영 능력, 재무 상태 등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점검하고 설치 후 장기간 미운영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재개 또는 보조금 환수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시설 유형별 실제 설치단가와 수요를 기준으로 지원물량과 단가를 재산정하고 부지·인허가·전력인입 등 필수조건과 사업 진척을 확인한 후 국비를 단계적으로 교부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주의 의견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문대림 위원의 제도개선 의견을 주의 의견으로 정리해 달라 이런 뜻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9페이지 연번 5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사업목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 순환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재이용률 등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수요

처 확보 및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갑자기 주의로 수용한다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임위에서도 당초에 논의할 때 주의도 있었고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하수 재이용수가 활성화가 될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대규모 수요처가 없는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도개선해서 확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재이용수 사용을 조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수요처를 예상 못하고 예산을 수립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부처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72쪽 연번 8번,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연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성 및 정책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암모니아·수소 유통 인프라의 활용 및 구축 관련 정책 방향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마련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 탈석탄 정책에 따른 기존 암모니아·수소 관련 사업의 중단 및 변경이 산업계와 사업 수행기관의 혼란 및 예산 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40년 탈석탄 목표시점과 이행경로를 전면 재검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주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 암모니아·수소 유통 인프라 활용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소시장 형성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했고 가급적이면 해외 수소를, 블루수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청정수소를 활성화하는 측

면으로 사업 정책 방향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정책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만 기존에 있던 CHPS(청정수소발전시장)와 일반 수소시장은 기업들이 기대이익이라든가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을 최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 유지를 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탈석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석탄발전 비중 그다음에 석탄발전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대체전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믹스를 고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탈석탄 정책과 관련된…… 또 일부는 전원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 의견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정부 의견대로 주의 조치 정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아마 관련 업계나 이쪽 전문가 집단에 지금 말씀하시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시고 강경숙 의원실하고 나경원 의원실에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정태호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정책을 바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상황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암모니아, 그러니까 저희가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할 때 사실 그게 해외에서 도입하건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건 저희가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

○정태호 위원 원래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소위 말하는 블루수소를 쓰는 게 이게 일종의 과도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 섰던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수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블루수소라도 일정 정도 인프라라든가 확산 기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청정수소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일부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정책은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수소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블루수소 등을 활용하는 수소경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수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 즉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투자를 해 왔는데 정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을 이용해서 핑크수소 생산해서 하는 것도 올진하고 영광 같은 데서 이전까지 그것을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 방침을 정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 왔던 얘기하고 지금의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소경제 쪽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엄청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시간만 흘러가고 또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상황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새로 짜든지,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조만간에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분명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도록, 정책 방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태호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유형을 시정으로 하는 게 맞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 방향, 사업추진 방식에 변경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사실상 결국은 기존에 전액 불용됐다는 것 자체는 지금 진행하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정 요구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무슨 징계 받는 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의로 갈 부분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내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 또는 부당한 처리나 이런 부분이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시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방향이 일정 정도 저희가 재정립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제로베이스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청정수소 중심으로 국내 수소 입찰시장을 일정 물량을—물론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발표를 해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일정 물량 로드맵을, 입찰 물량들을 제시했구요.

그다음에 일반수소 연료시장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이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갈구를 했던 분야였습니다만, 일반수소 시장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를 하겠다, 그 물량들을 만들어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일부는 바뀌 주고 일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게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가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 안 하세요?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되게 곤란해지거든.

○소위원장 유상범 곤란하다고 느끼시면……

○정태호 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주의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라는 얘기니까……

아까 뭘 수용한다 그랬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로 다 수용한다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주의로.

○정태호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가지고 내가 또 그 입장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나경원 의원실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추진 방향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73쪽 연번 9번,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외 생산기업 투자 보류 등으로 최종 투자결정이 지연되어 2025년에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전액 불용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추진계획·예산근

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도입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수소 생산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R&D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도 관련 예산의 사업명·예산액·추진목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대체 관계를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 및 대체전원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2040년 탈석탄 정책의 목표시점과 이행경로를 전면 재검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께서 금방 논의해 주신 앞 항목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하고 오만 살랄라 프로젝트는 저희 의도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가 아마 글로벌 시장이, 수소 시장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의 수요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은 그린수소 정책으로 일부 정책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청정수소를 국내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수전해 설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10MW 급에서 50~100MW급으로 키우고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R&D 전략들 그다음에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차원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던 탈석탄 목표시점과 이행경로에 대해서 현재 12차 전기본에서 관련 부분들을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정 의견도 주의로 완화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앞의 거랑 같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앞의 거는 내용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같고, 그렇다면 이 내용도……

○정태호 위원 하나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하려면 그것 역시 청정수소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태호 위원 정확하게 하면 그린수소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포스코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수소환원제철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시다만 1단계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포스코에서 기존에 있는 LNG

를 개질하는 블루수소로 실증사업을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사업부터는 저희가 청정수소로 수소환원제철을 하는데 과거 일정 정도 포스코가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원전 수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대규모, 지금 원전이 또 감발 들어가고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SMR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수소나 열을 같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철강을 그린철강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기후에너지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탄소중립 2050 잘 알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태호 위원 탄소중립 2050에 의하면 2050년에 수소를 약 2700만t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소 사용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한 50% 가까이가 산업이거든. 그러니까 전기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소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강하고 석유화학하고 시멘트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어떻게 수요를 충족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왔고 해외에서 조달하려면 일단 현재는 마이너스 256도 냉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액체화시켜서 액화수소운반선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2050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태호 위원 그것을 그래서 액화시키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 답을 보면서 답답한 거지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좌초되거나 중단이 돼서 못 하는 거지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막 지역이라든지 태양광을 활용해서 그린수소를 만들어 내서 유통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향후 10년 내에 아주 경쟁력 있는 단가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내가 논쟁을 못 하겠는데, 시간 때문에.

여하튼 이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얘기해 두게요.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로 부처에서 받아 준 의견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나경원 위원이 기후에너지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이는 관심, 특히

정태호 간사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추가로 나경원 의원실에 기후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연번 9번의 이 사안도 의견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연번 7번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가스히트펌프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 사례와 같이 보급 이후 환경상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향후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앞서 유형별 히트펌프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 에너지효율 및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탄소감축 수단과의 비용 효과성을 비교하는 등 히트펌프 보급정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 여기에는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이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시정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6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가스히트펌프 대신 전기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신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하나 궁금한 게 가스히트펌프를 탄소 저감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채택할 당시에 적어도 충분한 테스트는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채택이 됐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것은 히스토리상으로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가스히트펌프를 도입한 것은 저희가 예전에 전기가 항상 모자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 전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피크 시기가 되면 우리가 전기로만 감당하지 말고 피크를 상당 부분 가스로도 감당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가스히트펌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줬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NOx라든지 SOx라든지 일정 정도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스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스히트 보급사업들이 학교 같은 데 많이 보급이 돼 갖고 사실 배출 문제가 학생들의 건강 위해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 전기히트펌프로 바꿔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

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사실상 제도개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위원 주성훈 위원장님, 감사요구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92쪽입니다.

요구 사안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고요 감사 대상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감사요구 사유입니다.

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추경 증액 이후 총 3818억 원의 불용과 833억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추경 한 달 만에 지방비 매칭 재원 1050억 원 전액을 전용함은 물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사업관리와 관련 법령 준수를 소홀히 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동 건에 대해서는 맨 앞부분에 논의했던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추경에서 감액됐던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아마 감사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법 부당한 집행은 아니었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사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양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앞서 저희들 논의했던 그 사안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다. 그렇지요? 특히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감액해 온 것을 국회가 증액하고 정부는 집행을 못 하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억을 집행 못 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되겠다, 그렇게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

○허성무 위원 지방비 비매칭 재원 1050억 원을 전용했다 하고 그것을 또 국비 전액 지원으로 다르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예산편성과 집행 면에서 지적을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 다시 말해서 무공해차량을 우리

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보급해야 되고 빠르게 보급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적극행정으로서 장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이런 걸 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다른 조치를 갖다 댄다면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시기 시기마다 주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의견이 강하게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고 부처도 반대의견을 표명하니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잠깐만……

감사원 사무총장인데요.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저희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기후환경감사국도 9월 달에 신설을 하고 4년간 기후환경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위해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해 주시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감사에 포함되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면 국회에서 그것을 같이 감사 요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감사원에서 이 사안을 포함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결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유상범 감사원에서는 지금 감사 대상으로는 포함할 예정이다 이런 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십시오.

○**기상청차장 이정환** 기상청 차장 이정환입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김동준** 기획조정관 김동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기상청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100쪽입니다. 연번 5번,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 기상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일시적 상승 이후 2025년에 전 지표가 하락 또는 정체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상청은 생산하는 원천 정보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자체 앱과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공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의결을 한 거지요? 여기 보니까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한 걸로 보이네요.

○**전문위원 주성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차장 이정환**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주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부처에서 주의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준영 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케이웨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계해서 이런 기상인식 제고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기상서비스 만족도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상청차장 이정환** 기상서비스 만족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특보 등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가 반영…… 말씀하신 거고.

케이웨더 같은 경우는 기상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업체라든가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상서비스를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제도입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들여오고 나서 굉장히 예보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석관으로 옛날에 미국의 전문가를 들여왔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는 또 떨어졌다는 말이 들리더라고.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기상청차장 이정환** 그때 2008년도에 크로포드 단장님이라고 미국에서 전문가분을 우

리 1급으로 모시고 와서 한 3년 정도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계시면서 기상레이더 전체를 10대를 다 교체를 하고 예보시스템도 일별하고 예보관 교육도 영국과 미국으로 보내서 시키고 하면서 여러 작업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가지고 그것이 도입되고 하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축적된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자체 앱과 홈페이지 접근성·편의성이 자꾸 지적받는 건 좀 이상한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될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고 그걸 주의를 기어코 수용을 하시는 입장을 보이시나요?

○기상청차장 이정환 사실 국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저희들이 3, 4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국토부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넘사벽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3위 정도의 접속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민간의 기상앱하고도 같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는 노르웨이 이런 쪽하고도 경쟁을 하고 구글하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웃음소리)

○기상청차장 이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9월 중순에 다시 한번 개편할 예정이고 그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혹시 너무 편하게 그냥 가시면 볼 시간 없으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박지원 위원, 물어볼 거 없어요?

○朴芝源 위원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뭄 뒤에 거제에 엄청난 집중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제대로 예보하셨어요?

○기상청차장 이정환 저희들은 잘 맞혔다고 하고 있는데요. 비라는 것이, ‘경기도 남부 지역에 한 100~200mm 내일 올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비가 오는 지역은 10~20km 내외로 떠 형태로 굉장히 발달하는 양상이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더 좁은 지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좁은 지역은 많이 내리고 그 외 지역은 비가 안 오고, 이게 10km만 오른쪽으로 가 버리면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행안부나 이쪽에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맞다고 보지만 그 한 지점에 있는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전달하는 과정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년 빈도 그런 말을 하던데 맞아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던데 200년 빈도 정도는 맞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요?

○기상청차장 이정환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200년 빈도라면 시간당 100mm 정도인데요. 1년에 몇 번 안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시간당 140mm 이렇게 온다는 200년에 한 번 맞힐 걸 용기 있게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내가 200년 만에 올지를 미래에, 현재 끝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 지금 내일 200mm가 올지 감히 적기는 쉽지 않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 최근 10년에는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한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보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될 판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일반인들하고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200년 만에 오는 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주가 상승이라고 해 봐요. 얼마나 도드라집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그런데 200년 만에 한 번 오니까 몰라도 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상청차장 이정환** 말씀하신 바에 맞춰서, 저희들도 100년, 200년 빈도에 맞춰서 예보 체계를 개편하고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치 모델도 내년부터는 다시 론치(launch)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마 1980년대인가 김동완 통보관이 TV에 나오셔서 가지고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김동완 통보관이 우산을 들고 나가면 그냥 나가고 했다는 우스갯소리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기상청차장 이정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결국은 200년 만에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관의 신뢰도가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님 지적이 결코 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상청차장 이정환**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더 잡아 두고 싶고 물어볼 게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차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총 8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148쪽입니다.

연번 1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추경 증액분 254억 원을 포함한 802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액은 7188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집행액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과 추가 고용을 구분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추가 고용과 지속 고용을 확인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대·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반복되는 불용과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거 집행률과 고용유지율, 지원 제외율 등을 반영한 실제 집행 가능액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사업 예산을 인건비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관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반복되는 불용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밝히시기는 하겠지만 현재 차관님이 파악하시는 반복되는 불용의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추경 했을 때 추경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기존 지원하는 예산 중에 일부 기업에서 인원을 감원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본예산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올해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대체적으로 불용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사업별로 다른데 청년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불용인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주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이 예산은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의 형식으로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태호 위원 저런 것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공채 제도, 지금 삼성이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옛날에 과거에는 공채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경력직 채용으로 바뀌니까 공채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리지, 대기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아니면 창업인데 이것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깐,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이 부분 또는 일경험 예산 이것은 별 효과 없어요. 시키면 뭐 합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도, 예를 들면 청년들을 고용해 주면 그 지원을 잘해 주면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경총이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기업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기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간사님도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으로 정한다고……

○정태호 위원 예.

○이종욱 위원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남아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얼마 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112억 정도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112억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이종욱 위원 전용은 같은 유사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로 갔다는 것은 유사한 사업이나 내역사업이나 이런 데 안 쓰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보냈는데 이것은 참……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제도개선 할 건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근로감독관이 좀 증원이 되면서 실제 편성된 예산, 그 정·현원 차가 줄어들면서 발생해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다른 것을 전용, 그러니까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다 절감해서 이것들을 다 대응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한 거여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 추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상임위에서 유사하게 집행 부진의 반복 발생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은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제도개선 양해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위원님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도 정태호 간사님 입장과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적사항,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주로 1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빈일자리 기업으로 한정한다’, 지금 가겠다는 사람은 100인 이하 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자와 사실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불일치를 이루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결국은 대·중견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소위 중소기업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차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은 중소기업은 가능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채용을 늘리려면 대기업·중견기업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사실 이 예산을 하시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정부 차원에서 깊이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사실은 내년도 예산 어차피 또 심의해 주실 텐데 그때 저희가 그런 사업 구조 같은 것들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 사실은 매년 반복될 거예요. 매년이 아니라 아마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불용이 안 나온 적이 없지요, 상당량이지? 한 20~30%는 무조건 불용이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20~30%까지는, 연도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52쪽입니다.

연번 4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1조 10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898억 9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그중 II유형 청년층 목표 지원 인원은 목표 인원의 72.9%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 인원을 1만 명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10.2%인 1019명에 불과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와 같이 유형별 참여 수요자 추계 등 면밀한 검토나 예측 없이 과도한 사업 목표를 설정해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예산안 편성 시 유형별 참여 수요와 유인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집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실행률과 실효성을 높일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이렇게, 불용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폐지를 했고 제도개선을 상당 부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 취지를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모두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이게 보니까 2차 추경으로 1652억 원 증액했는데 추경 증액 예산 집행률도 46%밖에 안 되고 II유형은 추경을 했는데 청년인들이 외면해서 추경 증액 예산을 100% 불용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센터의 알선취업 실적은 1년간 직원 1명당 2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매년 제도개선만 해 갖고 그때그때만 때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건설 퇴직자 이·전직 지원 이게 불용이 많이 났는데 이 사업 자체는 현실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쪽에 그런 어떤 당초 계획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의 전체적인 스킴 구조를 새롭게 짜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앞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봐서 이번에 제도개선 하는 걸로 조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준영 위원 글썄요, 저는 제도개선 정도는 부족하고 일단 주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쨌든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그쪽 종사자들의 실업이 컸고 또 청년실업 때문에 좀 목표를 도전적으로 세웠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불용액이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목표를 도전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던 점은 또 평가받아야 되는 면이 있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이것은 배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고 또 허 위원님은 여당으로서 부처 입장을 잘 대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류했다가 추가 심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의할 사항은 아닌 듯해서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53쪽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센터의 알선취업 실적이 민간위탁기관 대비 크게 부족하고 고용노동부가 성과평가 기준을 알선취업이 아닌 상담 건수 중심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네 가지 모두 다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당 지급, 상담 지원이 아닌 구직자-구인자 간 매칭을 성사시켜 취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 알선취업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취소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행정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센터의 알선취업 실적을 평가할 때 민간위탁기관처럼 기본 단가표를 적용하여 알선취업 실적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존의 평가 지표를 활용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원 우수는 고용센터 본연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에서 제외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목적과 성과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알선취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계획을 2027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여기는 제도개선과 시정·주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효율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국회에 제시함에 있어 예산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I 유형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알선취업 건수를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구분 적시하여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

여기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이 조정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먼저 첫 번째, 고용센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취소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냥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제도개선 의견도 주셨지만 상임위의 의견

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다음으로 두 번째, 고용센터의 행정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하고 그다음에 단가표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최종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알선취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심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정리됐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예결산 설명자료에 I 유형의 예결산 내역과 취업알선 건수를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최종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제로 취업에 연결되는 지표 관리를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제도개선이라는 게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라기보다는 실제로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 주신 것도 제도 자체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글쎄, 저도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결위나 바깥에서 보는 의견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추경을 하면서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청년이 잘 안 됐다, 건설 업종이 안 됐다 하는 건데 원래 추경이 그랬지요, 청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건설 업종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한번 다른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추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청년이 그렇고 건설 업종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적은 결국 추경 하기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들고 와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가졌던 그런 야심찬 목표나 노력을 뒤돌아서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 거기다 고춧가루를 조금 더 진하게 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보류, 앞에도 보류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께서 보류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보류 사유도 노동부에서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을 충분히 지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대로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꾸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다음 페이지 15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연번 6번,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목적 및 법정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이 아닌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기획·운영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부적정한 예산 조정·집행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 및 책임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연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체계를 보완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대단하네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보니까 아주 대담하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되게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 이후에 원장 해임처분 등 인사상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도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주의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무거운 주의를 받는 것으로, 상임위 의견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결의대로 주의 하는 것으로 저희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의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취업지원 이런 예산들이, 훈련·알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성과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항상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6년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이 정책은 특별한 변화가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집행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보시면, I 유형과 II유형을 보면 결국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소위 자료 4권입니다.

국방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들어오셨습니까?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김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국방부에 대해서는 총 6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5건입니다.

51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시간관계상 국방부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대기하는 정부 부처에도 미리 고지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51쪽, 연번 1번 병영기본지원 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80.7%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 증액 526억 5500만 원의 173.5%에 달하는 913억 5400만 원을 이전용·조정, 이월, 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국가채무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를 국민에게 전가한 점 그리고 예산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하고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문구 수정을 어떤 걸 해 달라는 겁니까? 그 의견까지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줍니다. 추경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액의 76.3%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조정을 했고, 2차 추경 이후 병영생활관 사업에 419억 원을 넘겼다가 다시 152억을 돌려받는 등 예산 관리도 부실하게 하였고. 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면 대한민국에 징계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이 추경 사업은 왜 돈이 남은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목부터 보시는 것처럼 병영기본지원 시설 사업이라고 전방이나 격오지의 생활에 필수적인 급수시설, 체육시설, 병영시설 이런 부분이어서 전방·격오지에 이런 부분들을 연내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추가로 건의했던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70%만 됐냐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특성상 전방이나 도서도 많고 격오지 공사가 소규모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 협의 소요가 많아서 지체된 부분도 있고 또 전방은 출입절차 문제 또 일찍 겨울이 오다 보니까 동절기가 빨리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원활치 못했는데 저희가 엄중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잘 마련하도록 내부적으로 더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사병들 포함해서 군 인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강화하려다 생긴 문제고 지금 보니까 돈이 남은 것도 직접 설계하고 감독해서 오히려 국고를 아낀 것이지 불용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의견대로 해서 시정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재경부차관님, 결산에 대해서는 재경부차관님 의견도 좀 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즉 검토한 불용 이런 것 나온 것 중에, 526억 원 추경을 했는데 913억이 이전용·조정, 이월, 불용으로 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 할 부분인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금액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국방부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집행이나 이런 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도서도 있고 워낙 열악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얼마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징계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법이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사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특수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관님이 법 위반을 말씀하시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직무태만이 있습니다,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그래서 이게 한 해만 하고 영원히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돼 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저도 벽오지에 지역구가 있어서 잘 압니다. 배 타고 4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군장병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낭비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자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이 아름답다고 해 가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취지에서 심사하기 시작하면 여기 하나 마나예요.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이거를 시정으로 했다는 거는 거기서 충분히 토론이 있지 않았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상임위 때는 제가 충분히 좀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제가 보충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가 지금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리하고 지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되 중요한 거는……

○배준영 위원 여기 한 말씀하신다고……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영기본시설이잖아요, 급수시설, 전투체육, 병영생활관. 위치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열악한 위치나 시설을 어떻게 좀 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부모들이 애를 군대에 보내 놓고, 병영기본시설을 추경에 담았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애들 좀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526억 담았는데 419억을 이것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업에 전용했습니까, 도대체? 병영생활관 안 짓고 뭐 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용은 대부분 배상·보상 이런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했고, 전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병영생활관이나 병영기본시설을 대하는 국방부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사병들 시설 고쳐 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재경부차관님 공무원 징계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태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병들과 관계된 이런 사업들은 국방부가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단순 시정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씀하실 순서니까 말씀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저도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병영식당·급수시설 공사비를 제대로 안 썼다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딱 이것만 보면 징계를 해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징계까지 가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심각한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보류해 가지고 좀 더 상황 파악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는 게 형법처럼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공무원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의무, 성실의무 그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직무 태만도, 사실 공무원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직무 태만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보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위원님도 그렇고 정태호 간사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징계가 맞다고 지적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지니 적어도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했을 때, 5년 동안 봤을 때 그동안 불용 및 처리 내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당시 이 예산에 이·전용이 많이 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기 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서, 정태호 간사님까지 세 위원께 보고를 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사안은 보류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 59억 6100만 원 중 10억 5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6.9%로 저조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사업이 2026년도부터 개시됨에도 시설공사를 선계획해서 재정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화훈련시설 개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시정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성무 위원이 굉장히 낮춰 줬는데 국방부가 거부하시네요.

○허성무 위원 예, 이것은 수용하고 계시니까 시정으로……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부처에서 시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3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군 배상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군 배상금은 2025년 예산액 176억 8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이용 증액 1718억 7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 배상금의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538억 급증한 이유는 과거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적시에 지급되어야 할 국가배상금이 지급 미배정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사건별 피해자 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것 상임위에서는 그 입장이 정해진 게 없어요? 왜 표시가 안 돼 있어?

○김성희 위원 첫 번째랑 내용이 겹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유상범 겹친다고 해서 하나로 평가한 건가요?

○전문위원 주성훈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부가 수용해서 제가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가 주의라고 해 놓고서는 이걸 또 수용이야? 이걸 안 맞잖아,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연 이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걸 어떻게 시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로 묶어서 주의로 저희가 건의드렸던 겁니다.

○정태호 위원 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주의가 맞는 것 같지요?

○정태호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한 대로 주의로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도 주의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는 첫 번째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지금 분리시켜 봤기 때문에 판단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실은 단일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김남준 위원이 그렇게 시정해 달라고 따로 답았으니까 여기다 써 놓긴 했을 텐데, 보면 첫 번째 대규모 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주의 하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첫 번째로 합쳐서 첫 번째 것을 주의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탁월한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이 두 개로 나뉜 것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니깐 첫 번째 동그라미로 하고 내용은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2쪽입니다.

62쪽 연번 1번,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타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등 예산 규모가 618억 9000만 원으로 추경증액 198억 7400만 원의 3.1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적자국채만 늘어나게 하였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국채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4쪽입니다.

연번 3번, 의무장비획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단년도 편법 편성 및 100% 선급금이라는 불법적 집행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납품 기간 2년 이상의 장기 사업은 반드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하고 100% 선급금 지급 같은 부적절한 집행이나 집행잔액의 목적 외 임의 사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여 엄정한 재정 기강을 확립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참 황당한 내용이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것보다 낮춰 봤으면 한마디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부차관님, 다른 부처보다도 국방부의 예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들으면 좀 황당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거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이·불용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재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예산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기관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지요. 국방부가 자꾸 이것 제가 봐도 다년도 편성하는데 100% 선급금 지급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황당하네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국방부가 원래 사실 디브레인에 있어서도 이게 통합된 게 아니라……

○소위원장 유상범 마이크 가깝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디브레인 쪽에 재정정보에 있어서 통합된 게 아니라 보안 문제 있어서 따로 분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곳저곳에 분리된 사업장들이 많고 너무 조그마한 부대들, 그리고 이게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년간에 걸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하여간 저희 쪽에서 전반적인 디브레인에 있어서도 국방부하고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나 이런 것 자체를 향후에는 대시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주요한 것은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올해 아마 만들 예정입니다…… 아니, 27년 중에 만들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AI도 활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100%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으로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방부와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처에서도 한번……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국방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보다 조금 더 특수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지 지금 각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서 다음에 재심사할 때나 저희 재정 당국하고 또 국방부하고 같이 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건 재심사 대상 아니거든요.

예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게 반복적으로, 편법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패 구조라는 거거든요. 부패라는 게 단순히 부패한 것만 부패가 아니라 제도적인 부적절한 게 반복된다는 것은 어딘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의 이전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예산이 다 국가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처도 국방부도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되게 눈에 확 띄네요, 국방부가. 제가 예산을 처음 해 봐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해서 시정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더 말씀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이지요?

병무청 관계자들 다 들어오셨지요?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용무 병무청 차장 김용무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인환 병무청 기획조정관 김인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병무청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79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1번 병역판정검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잠복결핵검사의 불용률이 27.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잠복결핵 위탁검사 건당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병무청은 외부 위탁검사 관련 예산편성 시 최근의 실제 집행단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여기에는 주의·시정·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병무청은 실제 계약단가라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 의결한 바에 따라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가지요, 상임위에 한 대로?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 실제 계약단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의견은 뭐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당시 22년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상적인 검사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기관도 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할 때는 검사 인원도 대폭

줄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 편성단가의 77%를 반영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실제 계약단가가 그렇게 낮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미 실제 실시 단가는 알고 있는데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주의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적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면 납득이 가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게 현실적 단가는 알면서도 과다 계상해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주의 조치를 받을 만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수용합니다. 다만 견적서가 보통 4만 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직원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한 바에 따라서 적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지적사항 두 가지 중에 위의 상임위에서 결정한 주의는 수용하고 두 번째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주라는 부분도 주의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거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견적서가 4만 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 말하는 이거 1만 6000원 이 얘기입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견적서가 4만 원……

○병무청차장 김용무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4만 원으로 견적서가 나왔는데 실제 또 입찰할 때는 그 밑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낙찰가는 1만 6000원보다 적게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산 편성단가는 1만 6000원이고 그러면 예가는 얼마예요, 예정가격? 1만 6000원으로 그냥 합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정가요?

○이종욱 위원 잘 모르세요? 입찰할 때 예정가격.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그래서 편성가격을 1만 6000원으로 거의 보고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좀 이례적이네요. 보통 보면 이렇게 툭툭툭 떨어졌잖아요. 특히 24년도 같으면 1만 200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 자체를 바꿀 것 같은데 그냥 예산 편성가격 1만 6000원으로 했다 이거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견적서상 4만 원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그거를 과감하게 예산 편성가격을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실확인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가격이

4만 원인데 1만 2000원으로, 1만 1500원으로 낙찰됐다고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이종욱 위원 30% 40% 가격인데 그러면 30% 40%에 낙찰할 사람을, 견적가격을 4만 원으로 가지고 온 업체는 앞으로 빼세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런 업체랑 장사를 하고 있어요? 4만 원이라고 해 놓고 1만 10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업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실제 계약 단계에서 조달 단가는 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췄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용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가 둘 다 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님은 시정요구유형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주의로.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들은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 주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이종욱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견적가격 4만 원인데 실체는 1만 2000원, 그러면 30% 가격으로 납품이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의문이 드는데 궁금해하시니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소위원장 유상범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회계년도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예산인 11억 4700만 원을 불용해 불용 규모가 적지 않은데 매년 10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합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 및 입영판정검사 수검인원을 다른 사업보다 과다하게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수검인원을 다른 세부사업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집행인원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 서 의결한 바에 따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무슨 제도개선을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더 많이 해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편성 여비를 하면서 입영판정검사 인원 추계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냥 이게 앞면 뒷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이종욱 위원 그렇잖아요. 병역판정검사 하는 거나 여비 사업이나 똑같은 건데 왜 숫자가 달라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입영판정검사 인원을 추계를 하면서 사실은 6개월 이내의 자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아닌데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이 충분하게 관련 규정을 숙지 못 하고 해태해서 결국은 일이 발생한 거네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그걸 뭘 제도개선을 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결재선별로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정해진 규정이 다 있는데 숙지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발생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집중도를 높이도록 주의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제도개선할 사항이 없는데 제도개선 하겠다고 하시고…… 지침을 바꿀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주의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입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 할 때 실무자들, 그러니까 세부사업마다 편성기준이 다 같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의무자 여비 편성은 인원 대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김성희 위원 다른 기준은 없어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김성희 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제도개선으로 온 건데 그렇게……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제도개선을 할 게 없다고 말씀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거냐는 물음에 제도개선의 방법을 말씀을 못 하시니,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지 못 해서 발생한 업무의 부주의에 해당되니 차라리 주의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는 안을 드리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면……

○김성희 위원 예.

○정태호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사실은 입영 판정 검사가 전면 시행이 25년도 중간에 시행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의무자 여비 편성하면서 담당자가 정확히 이게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게 실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잘못인지 아니면 뭔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매년 10억 원 이상씩 불용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사이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병역의무자 여비는 법정 의무 지출이다 보니 너무 과소하게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 편성의 적정 수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불용액을 한 5억 정도 편성의 편차를 놓고 하면 좋은데 이게 10억 이상이 된다는 건 사실은 지나친 과다계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경미한 잘못이 있다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꼭 저는 주의를 계속 고수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도개선 그대로 받아도 괜찮습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를 할게요. 우리 김성희 위원이 내 말 끝나기도 전에 반대를 해 가지고…… 불 좀 꺼요, 신경 쓰이니까.

(웃음소리)

이렇게 합시다. 제도개선을 우리 병무청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일단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봐서는 반복적인 불용의 발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태호 간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적어도 2분의 1 이내로, 그러면 2분의 1 이내로 불용이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우리 예산을 하기 전에, 9월 달 안에 위원님들께 제도개선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정리하고, 이걸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처 관계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정실장을 통해서 방위사업청에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어떤 건지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서야지 비공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 인사를 주시고 먼저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비공개 사유는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수량 이런 부분들이, 군사기밀이 설명드리는 과정에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이런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비공개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 사안 중에서 국가기밀 사항이 있다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회법 제57조 5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재경부2차관과 관계자, 감사원 사무총장과 관계자, 기획예산처 관계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입법조사관, 의정기록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16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08분 비공개회의종료)

○소위원장 유상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소위 자료는 정무위원회(비경제)입니다.

소위 자료 3권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직원들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부터 방사청은 그냥 합시다. 비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비공개 하지

말고……

○**허성무 위원** 아니, 아까 감사요구 건이 민간업체들이 끼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민간업체를 위해서 그걸……

○**허성무 위원**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1차장 김영수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총무기획관 나오기로 돼 있지 않았나?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이상로** 왔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 이름 올라왔으면 말씀하셔야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이상로** 총무기획관 이상로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3건입니다.

16쪽입니다. 연번 1번,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겠습니다.

일반연구비 8600만 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 조사 결과의 보고·검토 및 정책 반영 과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집행하였거나 그 결과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게 정무위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동그라미로 여야가 합의해서 시정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에 감사요구안도 같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5페이지 감사요구안까지 같이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국무조정실에서요, 여기서는 또 예결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시정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그 말만 하면 안 되고요 기본 논리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고 하셔야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설명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꼭 연구용역의 어떤 내용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부처가 연구용역을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그 인식조사 결과가 검찰개혁에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해서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정책의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또 그 세부내용들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만들면서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똑같은 말 또 하네요. 국민 돈을 8600만 원 썼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연구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을 해야지요. 돈은 썼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지는 우리는 생각이 달라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납득 가능하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 최종 결정은 정부 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에 전임 총리께서 그동안 정부 검토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결론을 정부가 이거다 저거다 내린 게 아니고 그것을 국회에 저희가 이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정부의 입장을 달라고요. 우리가 돈은 썼지만, 결과는 나왔지만 어차피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 말을 해 달라는 거지요, 저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어차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뭐냐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의사 흐름 과정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더 이상 결정할 게 아니니 국회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다 이거다 의사결정은 안 한 상황이지요.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했나요, 활용 가능하게? 돈을 썼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추진단에서 충분히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장님, 연구용역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배준영 위원 지금 있으세요? 갖고 와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8600만 원을 집행했다는데 어떻게 8600만 원을 썼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가 세부 내역은 갖고 있지 않고요.

○배준영 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하고 왔어야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게 결산을 대하는 국무조정실의 자세입니까? 86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쓰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책도 안 가지고 와, 내역도 몰라,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나가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결과도 반영 안 하고, 그러면 결과를 어떤 데 썼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분에 누구한테 전달하고 어디에 인용하고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추진단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이 부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허성무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용역을 할 때 용역의 목적, 다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용역 결과를 채택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또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시정 조치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허 위원님은 두 번째,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이게 연구영역을 할 때 보완수사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전반에 관해서 용역을 썼던 거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거고 보통 용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 전체 자체는 그 용역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일부는 채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보고의 보완수사권 부분은 채택 안 한 것 중의 하나인 거지요. 실제로 또 진행 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검찰개혁연구단인가요? 이것을 의논했지만 최종적인 안이 결정되는 것은 고위 당정 절차도 거쳤고 어떻게 보면 국회 쪽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무조정실…… 공식 명칭이 뭐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검찰개혁추진단.

○정태호 위원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렇게 감사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인용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수준의 심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감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양 교섭단체 간에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정한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이 인식조사 결과가 우리 시스템에 공개는 돼 있습니까? 공개돼 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사실은 이 부분은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여당과 정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조사까지 다 마치고 내부적인 의견들도 다 취합이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국무총리께서 정부안을 포기하면서 추진단에서 활동했던 내역,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전혀 채택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처음부터 내기 위한 추진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정부안을 준비하기로 돼 있었고 그 준비하는 단체가 바로 검찰개혁추진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마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그냥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여론조사의 하나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특히 비판적 시각이 큰 야당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답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입장이 서로 간에 대치가 되니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7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 사업 신설을 위해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본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 사업을 회계연도 중 신설하고 기존 기본경비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위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제3항 1호 등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므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 여기에 대해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5800만 원을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사전에 다 했고 또 예산 당국으로부터 괜찮다는 문서까지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나 이런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시정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게 결국은 전용해 가지고 이런 없는 조직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법에 보면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지 예산의 전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 당국이 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예산 당국은 국가재정법 위반해도 됩니까?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위반 아니라는 도장 하나 들고 있어요?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기획예산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하고 전용의 취지들을 고려해 볼 때 약간은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단 자체의 설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추진단의 설립 운영비가 필요한데 당시 예비비를 통한 충당을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무조정실의 기본경비 약 6억 원 정도가 불용 예산이 되어서 예비비의 보충성의 원칙상 재정 운용상 전용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재정 운용 효율성상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의해서 협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부동산감독추진단이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라든지, 국세청, 금융위, 지금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 법도 있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단속하는 것. 따로따로 하는 거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거랑 한자리에 앉아서 누구 지휘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에 하던 기관에 그냥 모아 났던 거다 이런 설명으로 몇천만 원 전용해 가지고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국가재정법을 해석하면……

아니, 예산처가 무슨 무소불위입니까? 국회에서 저희들 국회의원이 해석하는 국가재정법 해석하고 예산처 해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석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국민들의 걱정까지 다 감안해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돈 오천몇백만 원 전용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해석할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전용해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고 이런 일은 일벌백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야를 떠나서 강하게 질책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배준영 위원님.

○허성무 위원 먼저 하세요.

○배준영 위원 먼저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집행성을 위해서 별도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집행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상임위 결론대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지요?

○허성무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을 시정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허성무 위원 엄격히 제한하자라고 상임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지금 당사자들을 징계하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의견……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이게 뭐 누구를 꼭 벌 주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보면 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공식기구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 무슨 보충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기문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전부 예산 전용해서 만들면 이거 전부 예비비 보충성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가장 곤란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미 부동산 통계 작성, 시장조사 및 관리,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예산 당국이 그냥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했다고 그래 갖고 손발 맞춰 갖고 이거를 만든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다 허락할 겁니까, 예비비 보충성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전 부처에서 똑같은 일이 생겨나도 기획예산처에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정태호 위원 시정은 받아들인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시정은 저희가……

○정태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 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임시조직은 대개 총리훈령 이상으로 정부 내부에서 긴급할 경우에는 설치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조직을 설치한 것 해서 거기다 예산을 한 거는 아니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전용을 한 거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정태호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은 재정부하고 그 당시에는 상의를 다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정을 받아들이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상황이고 협의까지 다 했는데 징계까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도 이번 계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이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의 실제 활동 내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추진단의 첫째 목적은 저희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려고 지금 법안까지 정무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 체계도 만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감독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토부, 금융위, 여러 기관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정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들을, 거의 주 1회나 2주에 1회씩 해서 우리 국무2차장이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해서 협조할 거는 뭐가 있는지 또 특별히 정부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범죄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부동산감독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수사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수사권한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야 되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소위 부동산 실태를 위해서 감독원이라는 기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국민들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수사권한까지 부여하는, 이를테면 부동산에 관련된 무소불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역할을 각 기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사기구를 별도로 창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방금 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당연히 통합해서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부동산감독원이 수사하나요? 경찰 있지요, 공수처 있지요.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사기구를 별도로 창설하는 이런 부동산감독원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추진단에서 규정도 안 돼 있는 사실상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체 보다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고 차장님도 아주 당연하게 무슨 수사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바라고요.

입장이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류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한 말씀만……

○소위원장 유상범 예,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아까 정태호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인식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지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조정실장님이 전화해 가지고 ‘어디 해라’ 이거랑 한 군데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경찰 어때? 뭐 하고 있어? 국세청 뭐 해? 갖다 붙여. 금융위 조사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기능이고 합쳐졌을 때 막강한 그런 통제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정태호 간사님 말씀처럼 그냥 평이한 일상적인 행정업무나 부처 협조 이런 것은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권력기관을 한군데 모으면 그냥 플러스입니까? 곱하기지요, 곱하기.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지금 그런 통합적 관리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차장님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은 수사기능은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이고요, 부동산감독원법은……

○이종욱 위원 아니, 없지만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법은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이종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통합적 관리, 주 1회마다 통합적 관리기능을 뭘 하고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면서요,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할 게 아니고 모여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뭘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부처 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한 사항은 있는지 또 특정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부에서 서포트할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국회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통합적 기능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여기서 지금 부동산감독원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종욱 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거지 차장님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허성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단하고 감독원하고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의 오해도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총리훈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종욱 위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허성무 위원** 예, 실제 그렇게 다 해 왔고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없이 만들어진 기구라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적이하게 집행하도록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예비비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안 돼서 총리실의 일반경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 예산 당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집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견대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상임위 의결에서 시정된 부분은 이미 수용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저희가 말했던 징계조치요구에 대한 의견을 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견이 많으니 이것은 보류하고 추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입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항은 18쪽입니다.

연번 3번,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 및 관리용역비 등의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일반용역비로 세목 조정하여 일괄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국회의 의사로 확대해석하여 사업 집행 방식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국회 예산권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것은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무위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팩트가 뭐냐면 여기 보면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국회의 의사로 확대해석했다’, 이 부분이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저희가 24년 11월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지금의 여당이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셨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그때 그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이 반영이 돼서 25년 예산이 확정된 건데 이것을 마치 25년에

특정 여당하고 협의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으셔서 이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의원실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의원실에서도 양해를 해서 이렇게 시정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는 이 지적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이것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 과정에서 당초 국회 의결과 달리 세목이 조정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세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이 80주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25년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5월에 정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6월이 돼서야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15를 겨우 두 달 남겨 놓고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저희는 그 행사를 좀 규모 있게 하고…… 또 이게 전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좀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하고 좀 크게 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사업들을 모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하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결이 달라서 제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보류를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보니까 지금 위원들의 지적과 부처 간의 지적 내용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추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됐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다 돼서 앞에, 그러니까 상임위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설명을 드려서 첫 번째 동그라미로 결론을 낸 겁니다. 여야 합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보류하고……

○배준영 위원 이게 말씀드리기 좀 면구스럽기는 한데 국무조정실이 이것을 집행 방식 변경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여러 의원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고한 의원 질의가 어느 정당의 의원들의 질의고, 제가 서면질의 리스트도 있어요. 거기 의원님들이 열한 분인데 제가 명단은 여기서 밝히지 않는 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자체가……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저희는 명확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결국 배준영 위원님 말씀은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오경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보훈부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3건입니다.

48쪽입니다. 연번 1번,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의 93.3%인 41억 90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사업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사항에 동의드립니다. 다만 요구유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처는 상임위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49쪽 연번 2번,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사업인 광복80주년기념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별도 공모절차 없이 광복회를 동 사업의 단일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다른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반복되는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요건을 해석하는 것을 지양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사항에 동의드립니다. 유형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 광복80주년이라는 사업은 중요하고 그렇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전용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광복회를 단일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 사업 내용과 예산 산출 근거를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이종욱 위원 광복회 4억 원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사업 내용은 학술연구, 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등 7개 사업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학술연구, 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그러면 광복 80주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광복 80주년 사업이랑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연관은 되겠지만 이름만 광복 그거 닮았지 서로 연계성은 하나도 없는 사업에 이렇게 중간에 보조금으로 전용하고 그래도 됩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광복 80주년 사업은 정부 부처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광복회에 주었던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이 광복 80주년이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과 다 같이 하기 위해서 광복회에 좀 전용했는데 이걸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는 등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감은 아닌 것 같고 주의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걸 제도개선 대상이 아니고 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좀 주시지요. 내용은 보니까 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정태호 위원 상임위에서는 뭐였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이요.

○**정태호 위원**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과 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0주기 사업에 있어서 향후 보조금 선정할 때 제도를 개선해서 절차 같은 걸 잘 거치라고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도개선도, 주의도…… 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은 드립니다만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공모 예외 요건에 해당 안 되는데 광복회를 단일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을 따로 할 사안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 있는 제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의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든 주의든 어느 것도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에서 여하튼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의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제도개선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제도개선을 하면 어떤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도개선에 대한 답은 없이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관련된 공모의 예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렸는데 갑자기 또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러면……

○**정태호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토론 끝에 제도개선을 공식 입장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도개선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어떤 제도개선이냐고 하면 결국은 관련 법률에 정해진 예외 요건 규정을 안 지킨 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주기 행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걸 선택해도 문제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주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되 이렇게 대놓고 법률을 위반하는 모습은 나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놓고 위반한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무적 판단에 또는 다른 이유로 법을 위반해서까지 단일보조자를 지명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볍게 보이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가볍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저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훈부에서 이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시한 자는 내가 징계를 각오하겠다는 정도의 어떤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보훈부 차원에서 정태호 간사님의 심도 있는 조언으로 제도개선을

선택했으니 대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정확히 제도개선에 녹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0쪽입니다.

연번 3번,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보수비는 제2회 추경에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받았으나 실제 공사에는 3억 7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용하거나 불용 처리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통상적인 시설보수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예산의 목적 외 이용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의 두 가지 유형이 제기되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사항에 동의드리고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이게 내역을 보니까 노후 시설의 포장·도장·방수, 승강기 교체, 국립서울현충원이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추경으로 12억 4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추경으로 확보한 공사·감리비 가운데 4억 4300만 원을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또 잔액까지 불용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서울현충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5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70년이 됐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아요. 알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서는 토목시설 보수 등 한 7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나중에 불요불급해서 조금 더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7건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불용과 이용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시설 내에 본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현충원에 많이 가 봤는데 처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모든 분야를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추경을 했는데 남고 전용하고 막 난리가 난 건데, 보훈

부가 제일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충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향후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인건비로 전용했어요. 그렇지요? 4억 7000만 원, 어느 쪽 인건비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본예산에서 인건비 한 4억 정도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7000만 원이 어디예요? 본청이에요, 지방청이에요? 어디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주로 지방청인데 제가 인건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보훈부가 지방청·지청이 꽤 많기 때문에 9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9급의 정원으로 예산을 받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9급들이 지방직으로 가거나 다른 직렬로 가기 때문에 현원들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적정하게 딱 정원대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9급 직원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9급 직원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가 지방청이 25개가 되다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이종욱 위원 통상 보면 연말에 인건비가 좀 남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추경으로 한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인건비를 썼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직이 새로 생겼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못 쓴 건지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 저쪽으로 오히려 돌린 건지. 공사하는 것은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인건비부터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아닙니까?

추경으로 했잖아요. 추경으로 했는데 당장 인건비가 빵구 났어. ‘야, 자를 수 있는 예산 어디 있어?’ 찾다가 보니까 이거로 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추경으로…… 아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들이. 무슨 엄청난 설계를 해야 된단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한두 달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인데 그것을 왜 집행을 못 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본예산에 있었던 토목공사 7건의 42억은 실은 되게 큰 사업의 7건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아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광장 및 도로 포장, 그렇지요? 현충원 도장·방수, 노후 승강기 교체, 이런 거 보름 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추경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예산에서 이용을 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왜 말이 또 바뀌어요? 아니, 추경 12억 5000 중에, 지금 지적사항을 잘못 지적했다는 겁니까? 지금 12억 5000 중에 인건비로 4억 6700 갔다고 했잖아요, 이용. 아니에요? 왜 말을 또 바꾸세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추경에서는 불용만 있었고 본예산에서 인건비 4억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이거 틀렸다고 진작에 말씀하셔야지. 아까 읽을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12억 중에서 3억 7000 집행하고, 그렇지요? 인건비 이용 4억 6000, 나머지 불용 4억 10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요? 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또 따지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고? 차관님, 공부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요.

저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억지로 잘라 썼다고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보다 직원들 인건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좀 엄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엄하게 어떻게 다룰까요?

○이종욱 위원 시정으로……

○배준영 위원 적어도 시정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아까 시정받았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기초실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예.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께서 조금 당황하셔서 묻는데 추경에 1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실제 공사는 3억 7000 사용하고 추경에서 받은 4억 6700만 원을 지방청 인건비로 전용했다 하는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을 받았고 불용 처리한 것까지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상임위에서 결정했을 때 여러분도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했을 때 이거 다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재경부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말씀하고 이거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 달라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보류를 좀 시키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개인적 보고 사안은 아니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상황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지금 이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도…… 전문위원, 이거 확인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이것은 상임위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받은 거 아니야.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적사항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차관, 기초실장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동의해서 주의까지 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지적사항이 그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도대체 업무를 파악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종욱 위원님께 내일까지 상세한 보고를 바로 해…… 내일 보고받을 시간도 없네.

그러면 언제 보고할까요?

○**이종욱 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야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보고서 정리해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두 분 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사항에서 여러분이 동의했는데 내용을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해 놓고 와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국가보훈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행정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임진홍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63쪽입니다.

연번 1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5년에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2%에 그치는 등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신고·조사 및 출장 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시정·주의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내용 동의합니다. 다만 시정

요구 유형이 세 가지로 돼 있어서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법이나 제도상에 결함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도를 고쳐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을 좀 더 제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보여서 주의 정도로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제대로 절차를 지켰는지 그런 것을 채용 실적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공공기관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없어 도 될 것 같아요. 없고 그냥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센터와 합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실제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62%, 채용비리 적발은 2025년도에 34건으로 81% 감소했고 출장도 적고 뭐 이러니까…… 이게 공공기관만 하신다는데 이것을 왜 굳이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폐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통폐합을.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부처의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배준영 위원 글썄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라리 통폐합을 검토해서 시정하는 걸 검토해 보지요, 시정.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이 시정으로 해서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 떤냐 하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실적이 많이 줄어서 그런 지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약간의 약자의 상황에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존재 목적이 그런 거지요?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호소해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권익위 말고는 호소할 데가 없고 또 권익위가 그 호소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보면 현장조사를 많이 못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조사관 숫자가 적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허성무 위원 현장조사를 많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출장인건비가 적게 나가서 지금 불용이 됐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 건수가 적어서 무조건 현장조사가 줄어드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현장조사는 채용비리 신고가 들어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례적으로 문서로 일단 서류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에 현장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출장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도 좀 확보를 하고 현장점검 좀 더 열심히 다녀서 예산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결국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예산도 출장비라든지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허성무 위원 실효성을 높이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관의 숫자만 늘리면 실효성이 높아집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저희가 조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새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 이런 데들의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굉장히 허술해서 저희가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보급시키고 확산시키고 하는 데 많이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점검 숫자가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제도 취지와 또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목적 달성을 충분히 다 못 하고는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불용이 좀 생긴 거고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넘어서 주의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아까 주의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주의 조치를 하고 좀 더 기관의 내실화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제도개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정이거나 주의를 시정요구사항 유형의 기준을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통폐합까지도 검토하겠다는데 하는데 동의를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배준영 위원 예, 동의하셨어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를 운영하는 전반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하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를 그야말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무슨 징계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구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한삼석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소위원장 유상범 2027년 예산안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안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금 9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한 600 정도 지금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하면서 개별적 사안이 나가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권리를 보호한다 하는 명분으로 이걸 시행했는데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여러 차례 나와 가지고 사례도 모아서 국민한테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이러면서 제도가 점점 형해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은 비리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로 생긴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부분의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본래의 기능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이것은 보류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유지될 걸로 보이고 아마 더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직원들 출장비 명목으로 대부분 잡혀 있는데 출장을 못 가는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아예 이번 달 안에 권익위의 입장을 한번 저희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때 차라리 예산을 다 삭감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태호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태호 위원 여하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시라고.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렇게 해서 9월 달 내에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입장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시정요구사항 유형은 일단 결정 보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사무처장 양청삼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78쪽입니다.

연번 1번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와 주요 지표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나 컨설팅 이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이 형식적인 실적관리가 아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 시정, 주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저희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정무위에서 의견이 있었고 소위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 목적이기도 하고 조직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계량화된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또 컨설팅받는 기관들도 그 뒤에 등급 상향이 된다는지 이런 여러 가

지 성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계량화된 성과가 안 잡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위원님,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는 23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 내용은 법상 요구되고 있는 보호수준을 정량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또 하나는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같이 있는데 작년 평가의 경우에는 정성평가 부분의 지표를 좀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대비 25년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1점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 부분은 평가지표를 좀 더 고도화하고 평가방식을 내실화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을 저희가 미흡 기관, 전체 등급을 S부터 D까지 5등급을 놓는데 C·D 등급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개 기관을 했는데 한 48%는 비슷하거나 상승이 안 됐지만 또 그 반대 52%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도 약 한 10점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위에서도 이 건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제도개선으로 추진을 해서 평가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바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결과는 또 예결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 성과가 국민들 기대하는 것만큼 계량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시정요구유형에 특별하게 의견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들어 보니까……

하실래요?

○허성무 위원 예.

지금 보고 내용에서도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평가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실제 이게 2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연수로 그렇게 많이 누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지속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데 궁금해서 묻는데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OECD 국가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이랑 한번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위원님, 객관적인 지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없고요. 공공과 민간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민간의 유출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EU 같은 경우에 GDPR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수준이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은 없고요 주법에 주로 있는데 주법에 좀 강하게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라

든지 일리노이주라든지 이런 주 수준은 저희들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은 유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예방적으로 해서 이걸 좀 줄여 나가는 데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도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제도개선하겠습니다로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컨설팅을 해서 90개 중에 47개는 올랐습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건 너무 궁색한 말씀이지요. 컨설팅을 했는데 43개가 등급이 변하지 않았다면 컨설팅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저희가 11억을 지난해 집행을 했고요. 컨설팅을 이제 맞춤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 그 기관에 필요한, 현장에 가서 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100명이 투입이 됩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적으로 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내년 예산은 11억으로 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9월 달 중에 결산소위 위원들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예산심사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내년 예산안은 11억에서 지출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9억 600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는 11억이고 내년에는 9억 6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9억 600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기이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심사 대상은 정무위원회 경제 부처입니다.

소위 자료는 1권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제 공정위랑 금융위 2개 남았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신동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문식 공정위 기획조정관 김문식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님, 보고 시작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사항은 2건입니다.

11쪽입니다.

연번 1번,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억 1400만 원의 ISP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시입니다. ISP가 사용을 권고한 민간클라우드를 이후 보안성 검토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결과 당초 2026년 1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었고 G클라우드 변경에 따라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3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준비하여 구축 단계에서의 계획 변경과 추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것, 여기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ISP 용역이 플랫폼 구축의 핵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경위와 검수·수용 과정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 용역으로 확인되면 용역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실한 사업계획과 검수·계약으로 사업 지연 및 추가 예산 소요를 초래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황당하긴 하네요. 용역을 했는데 가장 핵심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이 돼 가지고 사업까지 늦어지고.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먼저 예산 집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 시정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천만 상호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하루빨리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앞세운 나머지 ISP를 좀 더 꼼꼼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정보제공 플랫폼이 상당 부분 구축되어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전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담당자에게 징계에 이르는 책임을 물을 정도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국가재정에 불필요한 손실이 있었던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무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보다 좀 찬찬히 검토를 진행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사정을 헤아리셔서 징계를 시정으로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의 특성상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런 잣대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관의 명칭도 그렇고 하는 일 자체도 공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대식·송언석 위원님 다 정무위 소속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송언석 위원님은 정무위 소속이십니다.

○배준영 위원 송언석 위원님이 징계를 요청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만 봐도 저희는 심각하게 보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송언석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 것 보면 저는 좀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징계를 주장하시고요.

○이종욱 위원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ISP 용역이 결국은 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이종욱 위원 보안성 검토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한 것을 중간에 바꾸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정위에서 처음에 지침을 잘못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이 당시에 클라우드를 민간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사실 이 ISP 할 당시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 판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G클라우드로 바꾸긴 했지만 그게 고의로 저희가 G클라우드를 배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 부분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오면 크게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도 개인들이, 상조 가입자들이 동의를 하면 그들의 정보를 그대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일단 있는 정보, 새로 가입하는 사람 말고 기존의 가입자들한테 또다시 동의를 받아서 끌고 오는 게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보다 깔끔하고 완결성이 있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8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ISP가 권고한 민간 클라우드를 밝힐 수는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특별히 어떤 특정 클라우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민간으로 할 거냐 G클라우드로 할 거냐 이 정도의……

○이종욱 위원 아, 그 정도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그거를 검토한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지금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안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G클라우드를 할 예정이고 이미 국가정보관리원에 저희 부분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보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민간 클라우드를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문식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P 용역을 용역 사업자에게 시행을 시켰고 그 용역의 결과가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추진했다가 그다음 해 초에 저희가 내부의 정보화담당관실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G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ISP 할 때 공정위에서 무슨 제안서 같은 것, 기준이나 지침 주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특별히 저희 사전에 어떤 클라우드를 하라고……

○이종욱 위원 제안서에 그런 내용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입니다.

저희 제안 검토서에 클라우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ISP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민간, 공공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에게 민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는 의견을 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민간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을 6억 정도만……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것 민간이, 용역 업체가 제안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용역

업체한테 우리가 결과적인 어떤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판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 업체는 그런 결과물을 우선은 냈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과물을 저희한테 냈고 저희가 그 당시에 1억 2000 예산을 집행해서 사실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하셨냐고요.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검토를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저희가 뒤늦게 공공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우선 결과물이 나왔고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환수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생각이네요,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그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 제반 사건들, 여건들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 또 제안된 내용으로 구상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그 정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 유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입장 정리가 좀 어려우신 것 같지요?

○**이종욱 위원**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누구도 의도하지는 않은 건데 공무원하고 용역 업체하고 중간에 합동으로 어떤 공동 책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조금 그렇기는 하고 그러네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따로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계에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형태로 정리해서 시정 요구를 하실지 의견을 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저희가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담당 국에서만 추진을 했다면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가 또 개보위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다른 관계 부처하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더 협업을 해서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ISP가 부족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 유형 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의견은 지금 못 내시고 부처와 위원님들 사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라서 재검토를 할 테니까, 시정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때 시정을 어떤 내용으로 문구를 시정 요구로 해 달라고 할지 그 문구 초안을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항은 12쪽입니다.

연번 2번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부터 행정소송수행 사업까지 총 13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회계연도에 419건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의 여비를 전용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집행하였고 특히 UNCTAD 파견자의 귀·부임 관련 예산은 공사비 전용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UNCTAD 전문관의 파견 주기를 고려하여 교체가 예정된 연도에는 관련 비용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며 교체가 예정되지 않은 연도에는 실제 소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전용이 계속 반복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지출 수요와 시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 예산 집행 자체는 예산처의 전용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집행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정무위 단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가지고 주의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UNCTAD에 언제부터 파견 보냈습니까, 몇 년도부터? 오래됐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2018년 이쯤부터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3년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이종욱 위원 3년이에요, 파견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3년을 하다가 최근에 2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3년 하다가 최근에 2년.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이종욱 위원 공정위에서 이런 국제기구에 몇 명 파견해요? 여기에 한 명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UNCTAD 같은 경우에는……

○이종욱 위원 다 쳐서, 월드뱅크라든지 어찌고저찌고 다 쳐서.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국제기구는 저희가 OECD와 UNCTAD 두 군데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OECD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나가고 기존에 있던 분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이게 통상 2년이나 3년마다 교체 주기가 오는 건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기본경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아니라 기본경비로 잡혀 있다 보니까 매년 이게 변동폭이 없이 기본으로 쭉 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했다가 귀·부임이 없는 해에는 감액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경비로 쭉 일정 금액이 계속 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공정위 경비가 얼마데 3700이 없어 가지고 전용을 예산실 가서 하지요? 그렇게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열 기본경비 있는데 해외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국외여비로 쓸 수 있는 용도의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른 데 다 썼겠지요, 국외여비. 이것은 명분이 되니까 전용 요청한 거고 있는 국외여비는 다 썼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회계책임자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는 주의로 요청을 했고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라 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앞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징계요구를 삭제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송언석 위원님께서서는 특히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내가 보니까 아마 공정위는 이게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송언석 위원 입장도 한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입장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손주형** 기획조정관 손주형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사항은 3건입니다.

34쪽 연번 1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2023년 이후 가입 목표를 과다 산정해 출연금이 과도하게 교부되었고 이미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관련 금액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된 청년희망적금의 사업비 잔액을 즉시 환수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금융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됐지만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부위원장님, 지금 청년희망적금 관련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돼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3.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삼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3.6억 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3억 6000만 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종욱 위원** 많지는 않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4000명 정도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바꾸어서 기여금을 반영하기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회수해 잔액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욱 위원** 청년희망적금이면 언제 끝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2년도 도입해서 24년까지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24년까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끝난 지 벌써 한 2년 됐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만기가 2년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고요. 해지를 안 해 간 금액이, 지금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는 청년들이 한 4000명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돈이에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건 당연히 환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환수라기보다는 그 돈을 청년한테 줘야 될 돈이고……

○이종욱 위원 어쨌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다만 누적 이자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면 국고로 반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건 제도개선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위법·부당한 사유라기보다는 청년이 이 돈을 찾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보이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잔여금이 9억 1000만 원이라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리고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르네요. 뭐가 다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3.6억 원이고요. 누적이 8.8억인 이유는 운영 수익이 일부 좀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8.8억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종욱 위원 뭐가 맞는지, 여기는 삼억몇천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잔여금 9억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환수하겠다고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보다도 그냥 액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법·부당 그런 건 아니고 정도가 경미한 그런 어떤 조치지요. 그렇지요? 제도개선 할 건 없잖아요, 있는 돈 가져오기만 하면 끝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오히려 주의나 제도개선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두 개 다 똑같아요.

○허성무 위원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적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지금 이종욱 위원님은 주의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금융위는 제도개선이나 주의든 그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허성무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시행만 하면 끝나는 거

라서, 주의도 수용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다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주의로 수용해서 정리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주의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5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추정 편성 과정에서 단순한 채무소각이 아닌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채권 매입 및 소각에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근로 능력, 재기 지원 수요 등을 확인하여 개인별 재기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고용·복지·금융교육 등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하며 채무조정 완료 후 취업상태·소득변화·재연체 여부 및 금융생활 정상화 등 재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재기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어쨌든 성과관리 체계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점은 충분히 논의가 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주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 줄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임위 의견대로 해도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저는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사실상 수용했고 다만 여기서 그래도, 아마 제도개선이 더 맞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주의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번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평균 채권매입가율이 당초 예상한 5.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

후 잔여재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잔여재원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채권매입가율이 5%로 상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뒤에 얼마나 떨어졌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실제 매입가격은 현재까지는 한 2.5%로 해서 3313억을 지출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안 할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나머지 대부업 등 잔여 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마지막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변동분을 반영해서 어떻게 액션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금융위 자료에.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잔여 금액 그 자료도 새로 주시고요. 이것도 5%에서 2.5% 내지 3% 대 매입가율 변동에 따른 조치 계획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시정요구는 저는 상임위에서, 위의 거랑 똑같은 사업이니까요. 같이 주의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사업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허성무 위원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주의로 나왔지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종욱 위원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오는 자료 좀 보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고……

○김성희 위원 저는 유상범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유상범 위원장님이 제도개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고 제도개선 의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다만 제가 봐서는 이와 관련돼서 판단을 위한 보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2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다음 주에 결정할까요? 이번 주 내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금융위의 두 사안에 대해서는 둘 다 보류를 하는 걸로 다시 재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말씀대로 각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놓고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위원장님, 확인이 필요한데 연번 2번도 보류……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주의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연번 2번은 주의로 결정했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연번 2번은 놔두고 연번 3번만 이거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보고를 금주 중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결정했는데 또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 뒤로 미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가시지요. 3항은 제가 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부처 의견이 제도개선이었고 둘 다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은 주의고,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되니 9월 달 내로 우리 결산위원들에게 적어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잠깐 들어오라 그래요. 잠시만 들어오라고……

결산안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도 빗내서 주식투자 하라고 국민들한테 하셔 가지고 국민적 비난도 세계 한번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단일종목 ETF와 관련해서 사실은 김용범 실장이 결국은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전혀 없어

서 한번 가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특히 위원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더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추계로 55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ETF가 들어와서 55조 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기관이나, 정부나, 기금이나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대부분 20·30대인데요. 집을 살 희망이 없으니까 여유 자금 탈탈 털어 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55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 금융위원회에서 물론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그것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 제가 꼭 전달하고 싶어서 잠시 보자 그랬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장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금융위원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빛을 내서 꼭 투자해라는 그런 취지는, 취지와 달리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본시장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가서도 좋습니다.

잘 참아 준 김성희 위원 고맙습니다.

○**김성희 위원** 무슨 말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자리 이탈 안 하시고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성희 朴芝源 배준영 유상범 이종욱 정태호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윤

입법심의관 이윤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총무기획관 이상로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병무청
차장 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인환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질병관리청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 장호연
기상청
차장 이정환

기획조정관 김동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형욱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
기획조정관 정인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열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손주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 양청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사회 의 록